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505 호

2019. 2. 7. (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9-30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 고 시

제2019-50호 도시관리계획(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

제2019-53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항목 및 수수료 추가 고시 21

제2019-54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2

제2019-55호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3

◆ 공 고

제2019-28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49

제2019-30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 49

제2019-306호 공인 등록 공고 53

제2019-316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54

제2019-317호 <생전예수재>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 54

제2019-321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55

◆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9-1호 2019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81

◆ 구 고 시

제2019-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은평구) 88

제2019-1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관악구) 91

◆ 구 공 고

제2019-1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용산구) 93

제2019-91호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소공원2,3) 조성계획(안) 열람공고(광진구)	97
제2019-150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성북구)	105
제2019-10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노원구)	106
제2019-192호 영등포문화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영등포구)	109

◆ 사업소고시

제2019-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13
-----------------------------------	-----

자치법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30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자연경관지구 안의 토지로서 역사문화 가치보전을 이유로 정비구역 직권해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폐율을 정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연경관지구 안의 토지로서 역사문화 가치보전을 이유로 정비구역 직권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건폐율을 정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9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지구계획팀 (전화: 02-2133-8332, FAX: 팩스 02-2133-0736 E-mail: lee8960@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0호

도시관리계획(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30호(2004.1.6.)로 결정고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2018년 제17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11.2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금천구 시흥동 1021번지 외 1필지에 도시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입지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구역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소하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일원	1,050,252.7 (19,114.3)	-	1,050,252.7 (19,114.3)	-

※()안의 사항은 사업대상지 면적임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9,114.3	-	19,114.3	100.0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9,114.3	-	19,114.3	100.0
(광명시:18,462.6㎡, 금천구:651.7㎡)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변경)

■ 도로 (변경)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71	11,562	212,103.4	22	3,170	58,260.6	22	6,006	129,812.7	27	2,386	24,421.9
	변경	71	11,562	212,495.2	22	3,170	58,251.6	22	6,006	129,812.7	27	2,386	24,421.9
대로		5	4,664	110,808.9	-	-	-	3	3,072	92,644.6	2	1,592	18,164.3
중로	기정	15	4,044	75,780.8	7	2,194	48,058.7	6	1,528	23,776.3	2	322	3,945.8
	변경	15	4,044	76,172.6	7	2,194	48,450.5	6	1,528	23,776.3	2	322	3,945.8
소로		51	2,854	25,513.7	15	976	9,810.1	13	1,406	13,391.8	23	472	2,311.8

※ 도로는 모두 1공구로 분할, 근린공원(2,159㎡)과 중복결정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181	30	주간선 도로	1,706	대로3-1	남측 지구계	일반도로	완충녹지6	04.1.6	1공구
기정	대로	2	1182	30	보조간선 도로	709	대로2-1	대로3-6	일반도로	근린공원1	04.1.6	1공구
기정	대로	2	1183	30	집산도로	657	대로2-2	소하동 52-1 대로2-1	일반도로	초등학교1	04.1.6	1공구
기정	대로	3	1184	25	보조간선 도로	395	대로2-1	소하동 129 대로3-6	일반도로	어린이공원1	04.1.6	1공구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6	25 (25.5)	주간선 도로	7,690 (1,197)	철산동532 (중로1-1)	일직동 산76 (남측 지구계)	일반도로	완충녹지7	86.2.10	1공구 (오리로)
기정	중로	1	1185	20	집산도로	411	북측 지구계	대로3-1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중로	1	1186	20	집산도로	265	대로3-1	대로2-3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중로	1	1187	24.5	집산도로	1,064	대로2-2	대로2-1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중로	1	1188	20	집산도로	30	중로1-3	남측 지구계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중로	1	1189	20	집산도로	60	중로1-3	남측 지구계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중로	1	1190	20	집산도로	120	대로2-1	중로2-4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중로	1	1150	20	집산도로	244	대로2-1	지구계	일반도로		04.1.6	1공구
변경	중로	1	1150	20 ~ 23	집산도로	244	대로2-1	지구계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중로	2	1191	15	집산도로	42	대로3-6	중로2-2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중로	2	1192	15	집산도로	405	중로1-3	중로1-3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중로	2	1193	15	집산도로	369	중로1-3	중로1-3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중로	2	1194	15	집산도로	143	중로1-6	중로2-5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중로	2	1195	15	집산도로	539	대로2-2	중로1-3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중로	2	1196	15	특수도로	30	중로2-3	근린공원1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중로	3	1197	12	국지도로	140	중로2-2	중로2-2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중로	3	1198	12	국지도로	182	중로2-3	중로2-3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1	1199	10	국지도로	474	중로2-4	중로2-5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2	1176	9	국지도로	81	소로2-2	소로2-2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2	1177	9	국지도로	340	중로1-1	대로3-1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2	1178	9	국지도로	25	중로1-1	소로2-2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2	1179	8	국지도로	55	중로1-1	소로2-2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2	1180	8	국지도로	89	소로2-4	소하2-2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2	1200	9	국지도로	252	소로1-1	소로1-1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2	1201	9	국지도로	79	소로1-1	소로2-6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2	1202	9	국지도로	77	소로1-1	소로2-6	일반도로		04.1.6	1공구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203	9	국지도로	76	소로1-1	소로2-6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2	1204	9	국지도로	127	소로1-1	소로1-1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2	1205	9	국지도로	116	중로2-5	중로2-4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2	1206	9	국지도로	77	소로2-11	소로2-11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3	1173	6	국지도로	9	소로2-5	소로3-4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3	1163	6	국지도로	10	소로1-1	소로3-13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3	1167	6	국지도로	11	소로2-10	소로3-19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3	1169	6	국지도로	6	소로2-10	단독주택13	일반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1	1207	10	특수도로	38	대로2-2	중로2-2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1	1208	10	특수도로	53	중로2-2	광장1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1	1152	10	특수도로	28	중로2-2	광장1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1	1153	10	특수도로	28	중로3-1	광장1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1	1209	10	특수도로	35	중로1-3	중로3-1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1	1154	10	특수도로	63	중로2-2	광장1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1	1155	10	특수도로	40	중로2-2	남측 지구계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1	1156	10	특수도로	35	중로1-3	광장2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1	0-14	10	특수도로	53	중로2-3	광장2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1	1157	10	특수도로	23	중로3-2	광장2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1	1158	10	특수도로	23	중로2-3	광장2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1	1159	10	특수도로	23	중로3-2	광장2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1	1160	10	특수도로	30	중로2-3	근린공원2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1	1161	10	특수도로	30	중로2-3	근린공원2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2	1151	8	특수도로	12	대로2-2	B-1BL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3	1211	3~4	특수도로	42	대로3-6	소로2-2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3	1212	4	특수도로	32	대로3-6	소로2-2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3	1213	4	특수도로	16	중로1-1	소로2-1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3	1174	4	특수도로	8	중로1-1	소로3-5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3	1175	4	특수도로	22	대로3-1	C-1BL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3	1214	6	특수도로	12	대로3-6	C-1BL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215	3	특수도로	12	대로3-6	B-1BL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3	1216	4	특수도로	106	중로1-2	C-1BL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3	1217	4	특수도로	23	대로3-1	A-1BL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3	1218	4	특수도로	8	대로2-1	A-1BL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3	1219	5	특수도로	7	대로2-1	B-2BL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3	1162	6	특수도로	19	대로2-2	소로3-14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3	1164	6	특수도로	25	대로2-1	소로1-1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3	1165	6	특수도로	28	대로2-1	소로1-3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3	1166	6	특수도로	25	대로2-1	소로1-1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3	1168	6	특수도로	7	중로1-6	소로3-18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3	1170	3	특수도로	20	소로2-11	어린이공 원4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3	1171	4	특수도로	8	대로2-1	C-2BL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기정	소로	3	1172	6	특수도로	16	소로2-6	어린이공 원4	보행자도로		04.1.6	1공구

※ ()는 사업지구내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1150호선	중로1-1150호선	일부구간 노선 확폭 - B = 20m → 20~23m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보행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해 일부구간 노선 확폭

■ 주차장 : 변경없음

- 2) 공간시설 (변경없음)
- 3)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 4) 방재시설 (변경없음)
- 5)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3)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4) 상업용지 (변경없음)
- 5)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 6) 학교용지 (변경없음)
- 7)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 8) 의료시설용지 (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	계	19,114.3	감)19,114.3	-	-	19,114.3	감)19,114.3	-	1공구(광명시 : 18,462.6㎡, 금천구 : 651.7㎡)
		F	19,114.3	감)19,114.3	-	광명시 소하동 1344대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21대	19,114.3	감)19,114.3	-	

○ 의료시설용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F	의료시설용지(F) 폐지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되어 도시미관 및 토지이용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의료시설용지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시지원시설 및 공공시설용지로 변경

- 9) 주유소용지 (변경없음)
- 10) 종교용지 (변경없음)
- 11)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	1	합계	38,744.8	증)17,254.8	55,999.6	-	38,744.8	증)17,254.8	55,999.6	
기정		11	36,443.0	-	36,443.0	광명시 소하동 1345대	36,443.0	-	36,443.0	1공구(도1)
기정		12	2,301.8	-	2,301.8	광명시 소하동 1365-1대	2,301.8	-	2,301.8	2공구(도2)
신설		13	-	증)17,254.8	17,254.8	광명시 소하동 1344대	-	증)17,254.8	17,254.8	1공구(도3)

○ 도시지원시설용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1	I3	도시지원시설용지(I3) 신설	장기간 내대지로 방치되어 도시미관 및 토지이용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의료시설용지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시지원시설 및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함에 따른 신설

12) 쓰레기 자동수집소 (변경없음)

13) 공공시설용지 (변경)

구분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계	-	증)1,467.7	1,467.7	-	증)1,467.7	1,467.7		
	K1	-	증)1,467.7	1,467.7	광명시 소하동 1344대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21대	-	증)1,467.7	1,467.7	(광명시:816.0㎡, 금천구:651.7㎡)

○ 공공시설용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1	K1	공공시설용지(K1) 신설	장기간 내대지로 방치되어 도시미관 및 토지이용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의료시설용지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시지원시설 및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함에 따른 신설

나.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단독주택용지 (주택전용 필지) (변경없음)
- 2) 단독주택용지 (점포주택 필지) (변경없음)
- 3)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4)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5) 상업용지 (변경없음)
- 6)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 7) 학교용지 (변경없음)
- 8)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 9) 의료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폐지	1	F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서 정한 의료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500%이하
			높 이	• 15층이하
			배 치	•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형 태	• 건축물외부에 냉난방 실외기등 건축설비 노출금지 • 단, 도시가스배관시설, 태양열 주택설비 등은 외부노출가능 •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색 채	• -
			건 축 선	건 축 한계선 • 3m : 도로변에 면한 부분 •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간은 전면 가로공간과 연계하여 보행공간으로 조성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벽 면 지정선 -

○ 의료시설용지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F	• 의료시설용지(F) 폐지	• 의료시설용지(F) 폐지후 도시지원시설용지(I3) 및 공공시설용지(K1)를 신설함에 따라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폐지함

- 10) 주유소용지 (변경없음)
 11) 종교용지 (변경없음)
 12)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

○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1	11	용 도	- 허용용도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항 가목 내지 다목 및 해당 관리시설과 공장시설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건축물면적의 70%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및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별표6에 의거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라목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광명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500%이하
			높 이	• 15층이하
			배 치	•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형 태	- 건축물외부에 냉난방 실외기 등 건축설비 노출금지 - 단, 도시가스배관시설, 태양열 주택설비 등은 외부노출가능 -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색 채	-
			건축 한계선	3m : 도로변에 면한 부분 20m : 의료시설에 면한 부분 -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간은 전면 가로공간과 연계하여 보행공간으로 조성(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벽 면 지정선	-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1	12	용 도	- 허용용도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해당 관리시설과 공장시설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및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별표6에 의거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 가~라 항목이 건축물 연면적의 80% 이상일 것 -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500%이하
			높 이	15층(45m) 이하
			배 치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형 태	-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 건축물의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첨단이미지 지향 - 건축물외부에 냉난방 실외기 등 건축설비 노출금지 - 단, 도시가스배관시설, 태양열 주택설비 등은 외부 노출가능 -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색 채	-
			건축 한계선	3m : 24m 도로변에 면한 부분 5m : 30m 도로변 및 완충녹지와 면한 부분 -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간은 공공조경으로 계획하여 전면 가로공간과 연계한 보행 및 휴식공간 조성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5m : 공동주택 및 완충녹지와 면한 부분 -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간은 완충녹지와 연계한 건축조경 등으로 조성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기타	건축물의 형태·배치·색채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룰 것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1	13	지정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포함하여야 함 : 의원의 설치면적은 최소 9,385㎡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생산활동지원시설 범위내에서 설치)
			허용 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의한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 ※ 생산활동지원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30% 범위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7 및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별표7에 의거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
			불허 용도	지정용도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500%이하
			높 이	15층 이하
			배 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은 간선도로변 저층부 주출입구에 집단화
			형 태	-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할 것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할 것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조형적으로 처리할 것(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 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참조 -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색 채	광명시 경관계획 색채 가이드라인 준수
			건축 선	- 도로에 면한부분 :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3m 확보(결정도 참조) -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간은 전면 가로공간과 연계하여 보행공간으로 조성(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벽면 지정선	-
			기 타	의료시설용지(F)를 도시지원시설용지(I3)로 변경함에 따라 신설되는 내용으로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의료시설용지로 환원함

○ 도시지원시설용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13	도시지원시설용지(I3) 신설	의료시설용지(F) 폐지후 도시지원시설용지(I3) 및 공공시설용지(K1)를 신설함에 따라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변경함

13) 쓰레기자동수집소용지 (변경없음)

14) 공공시설용지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1	K1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목의 탁구장 및 바목의 공공업무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파목의 주민체육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2호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금천구), 70%이하(광명시)
			용적률	400%이하(금천구), 500%이하(광명시)
			높 이	15층 이하
			배 치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형 태	- 건축물외부에 냉난방 실외기등 건축설비 노출 금지 - 단, 도시가스배관시설, 태양열 주택설비 등은 외부노출가능 -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색 채	광명시 경관계획 색채 가이드라인 준수
			건축 한계선	3m : 도로변에 면한 부분 -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간은 전면 가로공간과 연계하여 보행공간으로 조성(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벽면 지정선	-

○ 공공시설용지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K1	공공시설용지(K1) 신설	의료시설용지(F) 폐지후 도시지원시설용지(I3) 및 공공시설용지(K1)를 신설함에 따라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변경함

④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경관계획 (변경없음)

나.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1) 차량출입 불허구간에 관한 계획(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름) (변경)

도면 번호	가구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1	A1 ~ A17	단독 주택	진출입시 영향이 큰 도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내 차량출입불허	세부사항 도면참조
	A-1 ~ C-4	공동	인근부지와의 동선을 고려하여 차량출입가능 구간을 제외하고 차량출입불	세부사항

도면 번호	가구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주택	허	도면참조
	B1 ~ B8	상업 용지	- 차량진출입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모퉁이변 및 통과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선도로변 차량출입불허 -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음	세부사항 도면참조
	C1 ~ C8	주차장	- 차량진출입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모퉁이변 및 통과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선도로변 차량출입불허 -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음	세부사항 도면참조
	D1 ~ D6	학교	차량진출입시 안전문제 등이 없는 곳을 제외하고 차량출입불허	세부사항 도면참조
	E1 ~ E2	주민 센터 파출소	주민 및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곳을 제외하고 차량출입불허	세부사항 도면참조
기정	F	의료 시설	차량진출입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모퉁이변 및 통과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선도로변 차량출입불허	세부사항 도면참조
변경	I3	도시 지원 시설		
	K1	공공 시설		
	H1 ~ H4	종교 용지	차량진출입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모퉁이변 차량출입불허	세부사항 도면참조
	I1	도시 지원 시설	차량진출입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인접 대지 경계부 및 버스베이 차량출입불허	세부사항 도면참조

- 2) 대지내 공지 (변경없음)
- 3) 주차장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4)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5) 전력·통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6)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라. 기부채납에 관한 계획 (변경)

- 1) 도시지원시설용지(I3) 신설에 따른 기부채납에 관한 계획 (신설)
 - 기부채납 면적 : 3,068.02㎡(부담률 : 토지면적의 16.1%이상)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068.02	100.0	
도 로		391.80	12.8	
공 공 시설용지	소 계	2,676.22	87.2	
	토 지	1,467.70	47.8	
	건축물 토지환산	1,208.52	39.4	

- 건축물 토지환산면적 예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규모		산 출 내 역	환산면적(㎡)
대지면적	1,467.7㎡	- 산출식 : (표준건축비×건축연면적)÷부지가액 - 내 역 : (1,859,000원×1,716.24㎡)÷2,640,000원	1,208.52
건축면적	325.48㎡		
연 면 적	1,716.24㎡		
층 수	지하1층/지상4층		

- 주1. 상기 기부채납 결정조서는 소하지구 의료시설용지(F)를 도시지원시설용지(I3)로 변경계획함에 따라 금회 신설된 내용으로,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부지는 의료시설용지로 환원하여야 함
2. 부지가액은 건축허가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며, 건축연면적을 토지로 환산한 면적을 포함하여 총 기부채납 면적은 16.1%이상 제공하여야 함(부지가액은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 및 광명시에서 각각 선정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3. 제공하는 기반시설 등의 세부적인 용도, 규모 등은 인수자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지식산업센터 준공전까지 관리청(광명시)에 기부채납하며, 제공되는 기반시설은 금천구민도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광명시에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함.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I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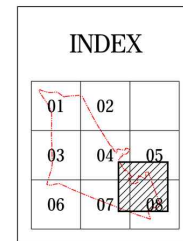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5) 및 금천구 도시계획과(☎02-2627-2062)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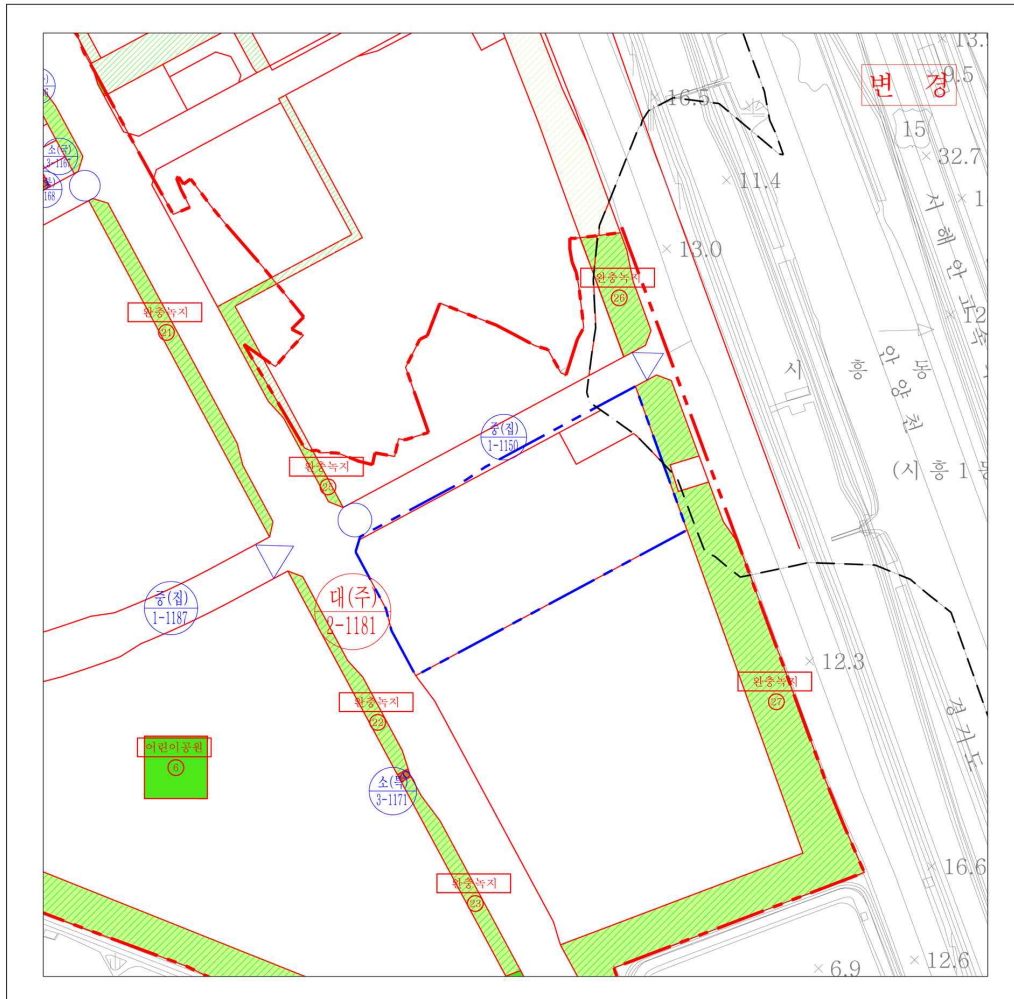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기정)도



범례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구역	 	경관 녹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약교
 	도로	 	공공청사
 	주차장	 	하천
 	광장	 	유수지
 	근린공원	 	폐기물처리시설
 	어린이공원	 	전기공급시설
 	소공원		
 	완충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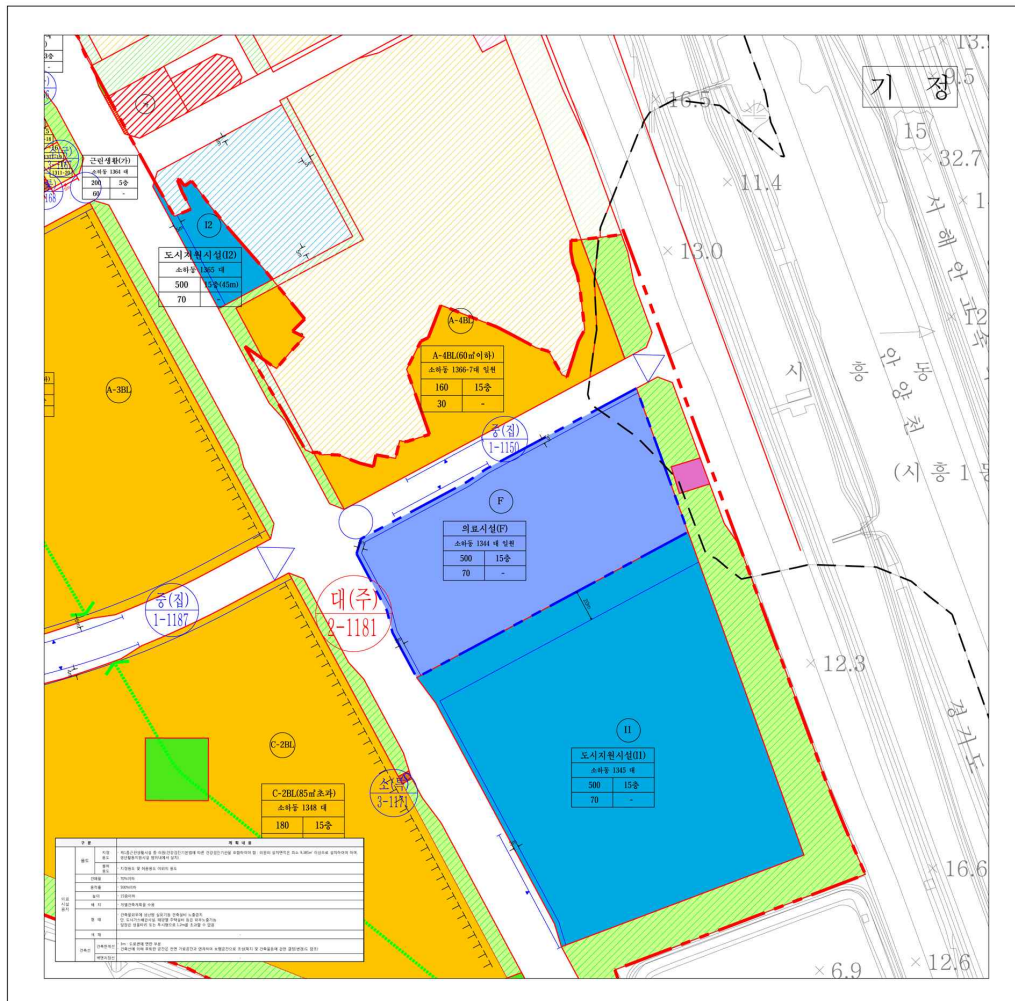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



범례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구역	 	경관 녹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약교
 	도로	 	공공청사
 	주차장	 	하천
 	광장	 	유수지
 	근린공원	 	폐기물처리시설
 	어린이공원	 	전기공급시설
 	소공원		
 	완충녹지		

INDEX			
01	02		
03	04	05	
06	07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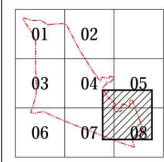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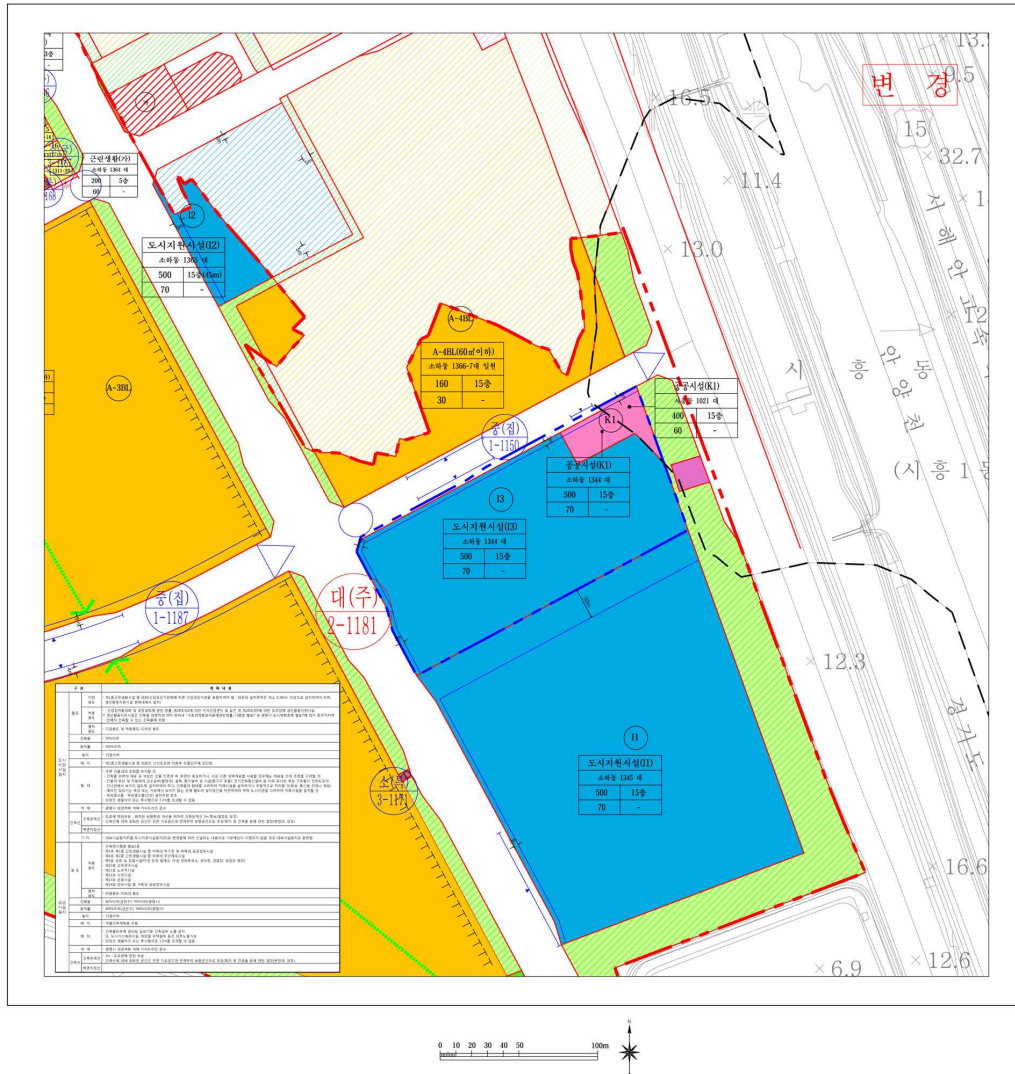
범 레

- | | | | |
|---|---------------------|---|-----------|
|  | 광역시와 국민입대추진단 지정사업구역 |  | 지원종도 |
|  | 지문단위계통구역 |  | 통계작성지정구역 |
|  | 공공주 택(아파트) |  | 통계작성/확인번호 |
|  | 의 표시 설 |  | 회계계좌 |
|  | 도시지정시설 |  | 건축한계선 |
|  | 공 원 |  | 단지내통도(보행) |
|  | 녹 지 |  | 직각배치구역 |
|  | 전기공급시설 |  | 차량출입허용구간 |
|  | 보행자전용도로 | | |

INDEX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범례

- | | | | | | |
|--|----------------------|--|-----------|--|------|
| | 광역시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구역 | | 지나간내회계구역 | | 지정용도 |
| | 공 동 주 택(아파트) | | 도시지원시설 | | 지정용도 |
| | 공 공 시 설 | | 건축완제선 | | 지정용도 |
| | 공 공 선 | | 단지내동선(보행) | | 지정용도 |
| | 녹 지 | | 직각배치구역 | | 지정용도 |
| | 전기공급시설 | | 차량통행허용구간 | | 지정용도 |
| | 보행자전용도로 | | | | 지정용도 |

INDEX

01	02	
03	04	05
06	07	08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3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항목 및 수수료 추가 고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항목 및 수수료를 추가 및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장

가. 건설공사 품질시험 항목 및 수수료(추가 및 변경)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 기간	비고
입도조정기층	밀도(흙)	KS F 2308	건	38,570	4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건	40,300	4	
	마 모	KS F 2508	건	43,260	4	
	노상토지지력비 (CBR)	KS F 2320	건	291,600	10	
	다 짐	KS F 2312	건	160,690	4	
	체가름	KS F 2502	건	174,320	4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건	21,820	4	
	함수비	KS F 2306	건	16,670	4	
	안정성	KS F 2507	건	113,190	14	추가
	현장밀도 (시내)	KS F 2311	건	118,640	4	1건 추가시 72,150
	현장밀도 (시외)	KS F 2311	건	162,610	4	1건 추가시 72,150
	평판재하 (시내)	KS F 2310	건	214,160	4	1건 추가시 167,780
	평판재하 (시외)	KS F 2310	건	257,850	4	1건 추가시 167,780
콘크리트 경계블럭 (보차도용)	치수	KS F 4006	조	10,070	4	
	휨강도	KS F 4006	조	31,350	5	삭제
	흡수율	KS F 4006	조	46,010	7	
케이블트 로프	휨강도	KS F 4011	조	31,350	5	삭제
철선	인장강도	KS B 0802	개	20,560	4	시험항목 수정
구상흑연 주철품	인장강도	KS B 0802	개	20,140	4	시험항목 수정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12,560	7	
	화학적분 (규소 Si)	KS D 1652	건	12,560	7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12,560	7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12,560	7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12,560	7	
	화학적분 (마그네슘 Mg)	KS D 1652	건	12,560	7	
포틀랜드 시멘트	비중(르사트리에)	KS L 5110	건	45,230	4	
	분말도	KS L 5106	건	33,040	4	
	응결시간	KS L ISO 9597	건	35,03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 기간	비고
	압축강도 (3일)	KS L ISO 679	건	104,740	9	시험방법 변경
	압축강도 (7일)	KS L ISO 679	건	104,740	14	시험방법 변경
	압축강도 (28일)	KS L ISO 679	건	104,740	32	시험방법 변경
	화학적분(강열감량)	KS L 5120	건	29,080	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02-513-46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4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3호(201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4호(2011.09.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6호(2013.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5호(2013.0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4호(2014.0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2017.02.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2017.0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7호(2017.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3호(2017.12.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4호(2018.0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2018.06.28.)로 변경 결정된 동작구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 정	증 · 감	변 경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동작구 노량진동 270-2번지 일대	739,070.5	감) 120	738,950.5	동작구 노량진동·대방동 일대의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역의 무 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남생활권 의 자족적인 배후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9년

○ 목표년도 : 2016년

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739,070.5	감) 120.0	738,950.5	100.0	-
획지	소 계	506,342.9	감) 99.5	506,243.4	68.5	-
	단독주택	29,673.0	-	29,673.0	4.0	-
	공동주택	307,783.7	증) 124.5	307,908.2	41.6	-
	복합시설	148,709.2	-	148,709.2	20.1	-
	근린생활시설	7,907.0	-	7,907.0	1.1	-
	종교시설	12,270.0	감) 224.0	12,046.0	1.7	-
기반 시설	소 계	232,727.6	감) 20.5	232,707.1	31.5	-
	공원녹지	47,248.0	감) 11.0	47,237.0	6.4	-
	공공시설	16,532.0	-	16,532.0	2.2	-
	공공공지	178.0	-	178.0	0.0	-
	문화시설	5,571.0	-	5,571.0	0.8	-
	학 교	59,393.0	-	59,393.0	8.0	-
	도 로	103,805.6	감) 9.5	103,796.1	14.1	-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2)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구 분		계획세대		인구수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0,075	10,056	27,027	26,975	
기시행구역		511	511	1,379	1,379	
준치지역		1,471	1,471	3,796	3,796	
재정비 촉진구역 (공동주택)	소계	8,093	8,074	21,852	21,800	
	40㎡ 이하	647	647	1,747	1,747	
	40㎡~60㎡	2,928	2,921	7,906	7,887	
	60㎡~85㎡	3,588	3,576	9,688	9,655	
	85㎡ 초과	930	930	2,511	2,511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세대수 변경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개소	면 적 (㎡)	비 고
교육시설	계	2	59,393.0	
	초등학교	1	12,061.0	
	고등학교	1	47,332.0	
공공청사	계	3	6,383.0	
	치안센터	1	400.0	
	주민센터	1	3,368.0	
	도시재생지원센터	1	618.0	
문화시설	문화시설	1	5,571.0	
체육시설	체육관	1	1,997.0	

※ 노량진3·4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청사(일자리+복지센터) 폐지 및 체육시설(체육관) 신설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 정	증 · 감	변 경	
공원 시설	노량진 근린공원	1	-	1	47,248.0	감) 11.0	47,237.0	생태공원, 중앙공원, 송학공원, 노들공원, 대방공원, (유한)공원
공공 공지	공공공지	1	-	1	178.0	-	178.0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5) 교통계획(변경없음)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촉진사업의 종류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계			739,070.5	감) 120	738,950.5	－	
촉진 구역	소계 (8개 구역)		461,848.9	감) 120	461,728.9	－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	132,132.0	－	132,132.0	주택재개발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16,208.0	－	16,208.0	주택재개발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	73,153.0	－	73,153.0	주택재개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27-5번지 일대	40,512.5	－	40,512.5	주택재개발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	38,137.0	감) 120	38,017.0	주택재개발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	72,809.0	－	72,809.0	주택재개발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대방동 13-31번지 일대	33,154.5	－	33,154.5	주택재개발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대방동 23-61번지 일대	55,742.9	－	55,742.9	주택재개발	
존치 구역	소계 (5개 구역)		147,416.0	－	147,416.0	－	
	노량진9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84-11번지 일대	18,564.0	－	18,564.0	－	
	노량진10존치관리구역	대방동 49-2번지 일대	57,305.0	－	57,305.0	－	
	노량진11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84-18번지 일대	21,415.0	－	21,415.0	－	
	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310-95번지 일대	15,577.0	－	15,577.0	－	
	노량진13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221-59번지 일대	34,555.0	－	34,555.0	－	
존치시설		－	104,941.0	－	104,941.0	－	
기시행 구역	노량진1재개발구역	노량진동 122-37번지 일대	17,539.6	－	17,539.6	(주택재개발)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구역	노량진동 307-9번지 일대	7,325.0	－	7,325.0	(시장정비사업)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증·감	변 경	
계			739,070.5	감) 120	738,950.5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723,534.5	감) 120	723,414.5	97.9
		제1종일반주거지역	46,854.0	감) 11.0	46,843.0	6.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67,854.9	-	167,854.9	22.7
		제2종일반주거지역	127,007.1	-	127,007.1	17.2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증·감	변 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381,818.5	감) 109	381,709.5	51.7
		준주거지역	12,108.0	-	12,108.0	1.6
일반상업지역			3,428.0	-	3,428.0	0.5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 노량진1~4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증·감	변 경	
계			38,137.0	감) 120.0	38,017.0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38,137.0	감) 120.0	38,017.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475.0	감) 11.0	1,464.0	3.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36,662.0	감) 109.0	36,553.0	96.1
	준주거지역		-	-	-	-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 노량진6~8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10) 용도지구 변경계획(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역명	구역면적 (㎡)	기준 용적률(%)	상한 용적률(%)	순부담 면적(㎡)	대지면적 (㎡)	완화 받을수 있는 용적률(%)	계획 용적률(%)	비고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	132,132.0	190	250	20,907.0	101,880.0	244.21	244.21	-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16,208.0	190	414	2,847.0	12,108.0	414.00	397.94	역세권밀도 계획적용
노량진3 재정비촉진구역	73,153.0	190	250	9,392.0	44,300.0	244.03	244.03	-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40,512.5	210	260	5,796.2	31,540.8	260.17	252.66	기준용적률 20% 완화
노량진5 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38,137.0	210	6,832.1	29,684.0	272.83	269.73	기준용적률 20% 완화
	변경	38,017.0	210	6,808.0	29,584.5	272.82	269.73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72,809.0	210	300	12,388.0	54,242.0	272.35	268.01	기준용적률 20% 완화
노량진7 재정비촉진구역	33,154.5	195	240	4,173.0	22,478.0	242.06	237.44	기준용적률 5% 완화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55,742.9	210	300	6,923.3	42,080.9	242.77	229.70	기준용적률 20% 완화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기반시설(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 정	증 · 감	변 경	
기 반 시 설	총 계	232,727.6	감) 20.5	232,707.1	100.0
	도 로	103,805.6	감) 9.5	103,796.1	44.6
	공 원	47,248.0	감) 11.0	47,237.0	20.3
	학 교	59,393.0	-	59,393.0	25.5
	공공시설	16,532.0	-	16,532.0	7.1
	공공공지	178.0	-	178.0	0.1
	문화시설	5,571.0	-	5,571.0	2.4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 재정비촉진구역별 순부담률 산정(변경)

- 재정비촉진구역 순부담비율은 10%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역명		재정비 촉진구역 (㎡) ①	계획 기반시설 (㎡) ②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③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④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 시설면적(㎡) ⑤	순부담면적 (㎡) (B=②-③-④-⑤)	순부담률 (%) (B/①)
합 계	기정	461,848.9	127,017.2	35,114.1	22,683.8	-	69,258.6	15.00
	변경	461,728.9	126,996.7	35,079.8	22,721.7	-	69,234.5	15.00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132,132.0	30,252.0	3,681.0	5,664.0	-	20,907.0	15.82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16,208.0	4,100.0	215.0	1,038.0	-	2,847.0	17.56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73,153.0	28,853.0	14,415.0	5,046.0	-	9,392.0	12.84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40,512.5	9,955.7	2,098.9	2,099.9	-	5,796.2	14.31
노량진5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38,137.0	8,453.0	508.8	1,112.1	-	6,832.1	17.91
	변경	38,017.0	8,432.5	474.5	1,150.0	-	6,808.0	17.91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72,809.0	22,286.0	6,818.0	3,080.0	-	12,388.0	17.01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33,154.5	10,676.5	5,442.5	1,061.0	-	4,173.0	12.59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55,742.9	12,441.0	1,934.9	3,582.8	-	6,923.3	12.42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순부담면적은 건축물(체육시설 1,809㎡)환산 기부채납면적 반영(984㎡)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역명		계 획 세대수	일반주택 (세대)	임대주택(세대)					부분임대
				소계	40㎡이하	40~50㎡	50~60㎡	60~85㎡	
합 계	기정	8,093	6,668	1,425	586	551	267	21	48
	변경	8,074	6,649	1,425	586	551	267	21	48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1,997	1,657	340	162	140	38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421	315	106	-	-	85	21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1,012	838	174	80	74	20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860	713	147	60	64	23	-	
노량진5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746	616	130	54	58	18	-	25
	변경	727	597	130	54	58	18	-	25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1,499	1,237	262	106	106	50	-	23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551	457	94	44	39	11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1,007	835	172	80	70	22	-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세대수 변경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16) 폐기물 관리계획(변경없음)

17) 방재계획(변경없음)

18) 정보화계획(변경없음)

19) 에너지순환계획(변경없음)

20) 특성화계획(변경없음)

21)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 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구역명		구역면적 (㎡)	대지면적 (㎡)	기준 용적률(%)	상한 용적률(%)	건폐율 (%)	계획 용적률(%)	평균층수/ 최고층수	비고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132,132.0	101,880.0	190	250	22.49	244.21	-/30이하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16,208.0	12,108.0	190	414	43.59	397.94	-/29이하	-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73,153.0	44,300.0	190	250	24.34	244.03	-/30이하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40,512.5	31,540.0	210	260	23.54	252.66	20/30이하	-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38,137.0	29,684.0	210	300	24.56	269.73	-/30이하	-
	변경	38,017.0	29,584.5	210	300	24.56	269.73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72,809.0	54,242.0	210	300	20.61	268.01	-/28이하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33,154.5	22,478.0	195	240	23.67	237.44	18/30이하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55,742.9	42,080.9	210	300	20.10	229.70	22/30이하	-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 구역별 주택규모별 배분계획(변경)

구 역 명		합계	분양(부분임대)				임대				
			소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계	기정	8,093 (48)	6,668 (48)	2,171	3,567	930 (48)	1,425	586	551	267	21
	변경	8,074 (48)	6,649 (48)	2,164	3,555	930 (48)	1,425	586	551	267	21
노량진1촉진구역		1,997	1,657	269	812	576	340	162	140	38	—
노량진2촉진구역		421	315	99	216	—	106	—	—	85	21
노량진3촉진구역		1,012	838	198	443	197	174	80	74	20	—
노량진4촉진구역		860	713	352	361	—	147	60	64	23	—
노량진5 촉진구역	기정	746 (25)	616 (25)	260	316	40 (25)	130	54	58	18	—
	변경	727 (25)	597 (25)	253	304	40 (25)	130	54	58	18	—
노량진6촉진구역		1,499 (23)	1,237 (23)	460	729	48 (23)	262	106	106	50	—
노량진7촉진구역		551	457	208	230	19	94	44	39	11	—
노량진8촉진구역		1,007	835	325	460	50	172	80	70	22	—

※ ()는 부분임대 세대임

가)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 ~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나)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동작구 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	38,137.0	감) 120	38,017.0	—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2)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38,137.0	감)120.0	38,017.0	100.0	－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8,453.0	감) 20.5	8,432.5	22.2	－
	도 로	6,978.0	감) 9.5	6,968.5	18.3	－
	공 원	1,475.0	감) 11.0	1,464.0	3.9	－
택 지 (획 지)	소 계	29,684.0	감) 99.5	29,584.5	70.8	－
	5-1	26,047.0	증) 124.5	26,171.5	68.3	공동주택
	5-2	3,307.0	감) 226.0	3,081.0	8.7	종교부지
	5-3	330.0	증) 2.0	332.0	0.9	종교부지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5	15	집산 도로	464 (133)	노량진동 240-79	노량진동 270-2	일반 도로	-	서고 503 (09.12.10.)	
기정	중로	2	7	15	집산 도로	715 (290)	노량진동 306-10	노량진동 279-5	일반 도로	-	서고 503 (09.12.10.)	
기정	중로	2	9	15	국지 도로	645 (30)	상도동 453	대방동 45-38	보행자 우선도로	-	서고 503 (09.12.10.)	
기정	중로	3	101	12	-	200 (19)	노량진동 27-2	노량진동 87-49	-	-	서고 174 (78.04.25.)	
기정	소로	2	C	8	국지 도로	59	노량진동 271-32	노량진동 289-42	일반 도로	-	서고 174 (78.04.25.)	

※연장의 ()는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임

○ 공원(변경)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③	노량진근린공원 (중앙공원)	근린 공원	대방동 44-29번지 일대	11,683.0 (1,475.0)	감) 11.0 (감) 11.0)	11,672.0 (1,464.0)	조선총독부 고시제208호 (1940.03.12.)	-

※()는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다)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 경	
공동이용 시설	관리사무소	노량진5재정비 촉진구역 내	70.0	증) 191.6	261.6	-
	경비실		20.0	-	20.0	-
	주민공동시설		300.0	증) 77.8	377.8	-
	경로당		100.0	증) 140.6	240.6	-
	보육시설		200.0	증) 90.5	290.5	-
	문고		100.0	증) 243.2	343.2	-
	주민운동시설		500.0	증) 1018.7	1,518.7	-
	어린이놀이터		1,058.0	감) 44.8	1,013.2	-

※ 재개발사업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 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노량진5 재정비	38,137.0	-	-	동작구 노량진동 270-3번지일대	97	-	-	97	-	-
변경	촉진구역	38,017.0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 건축시설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 수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평 균	최 고	
기정	노량진5 재정비 촉진구역	38,137	5-1	26,047	동작구 노량진동 273-9번지일대	공동 주택	24.56	269.73	90 이하	-	30층 이하	
			5-2	3,307	동작구 노량진동 270-3번지일대	종교 시설	건축법규에 따름					
			5-3	330	동작구 노량진동 284-1번지일대	종교 시설	건축법규에 따름					
변경	노량진5 재정비 촉진구역	38,017	5-1	26,171.5	동작구 노량진동 273-9번지일대	공동 주택	24.56	269.73	90 이하	-	30층 이하	
			5-2	3,081.0	동작구 노량진동 270-3번지일대	종교 시설	건축법규에 따름					
			5-3	332.0	동작구 노량진동 284-1번지일대	종교 시설	건축법규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구 분	계	임대(㎡)				분양(㎡)			
					소계	40이하	40~50	50~60	소계	60이하	60~85	85이상
			기 정	746(25)	130	54	58	18	616(25)	260	316	40(25)
			변 경	727(25)	130	54	58	18	597(25)	253	304	40(25)
			※ ()는 부분임대 세대수임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중앙공원 변 : 건축한계선 3m ●15m, 보행자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6m ●기타 건축선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름									
공공보행통로 계획			●노량진1구역과 8구역을 연결하는 동서간 공공보행통로 계획(폭 7m)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	규모별 세대수				비고
					합계	40㎡이하	40㎡~50㎡	50㎡~60㎡	
기정	노량진5구역	38,137.0	-	-	130	54	58	18	-
변경		38,017.0	-	-	130	54	58	18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의 조건 사항(변경없음)

<2017년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2017.12.12.)>

-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심의 등 해당 하는 절차에서 검토하여 반영할 것
 - 대상지는 빗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불리한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 지역 방재 성능목표 기준 등에 적합하게 우수처리계획을 수립할 것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BF)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인증을 받을 것

<2018년 제1차 소위원회 자문(2018.03.30.)>

- 자전거도로는 지형의 경사 및 차도가 인접해 있는 여건 등을 감안하여 안전 여부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계획할 것
- 공원은 지형(경사도 등), 역할 및 기능(설치기준, 보행환경, 녹지축 연결 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다)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2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증 ·감	변 경	
계			739,070.5	감) 120	738,950.5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723,534.5	감) 120	723,414.5	97.9
		제1종일반주거지역	46,854.0	감) 11.0	46,843.0	6.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67,854.9	－	167,854.9	22.7
		제2종일반주거지역	127,007.1	－	127,007.1	17.2
		제3종일반주거지역	381,818.5	감) 109	381,709.5	51.7
	준주거지역		12,108.0	－	12,108.0	1.6
일반상업지역			3,428.0	－	3,428.0	0.5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 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류	18	25~40	주간선 도로	6,490 (730)	노량진역전	구로동	일반 도로	상도동길	건설부고시 제177호 1962.12.08	장승 배기길
기정	중로	2류	6	15	집산 도로	142	노량진동 51	노량진동 84-9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2류	7	15	집산 도로	715	노량진동 306-10	노량진동 279-5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A	12~15	집산 도로	240	노량진동 309-39	노량진동 225-5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101	12		200	노량진동 27-2	노량진동 87-49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74호 1978.04.25	
기정	중로	3류	33	12	국지 도로	390	노량진동 306-10	노량진동 246-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34	12	국지 도로	65	노량진동 233-5	노량진동 248-14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35	12	국지 도로	95	노량진동 232-143	노량진동 232-255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36	12	국지 도로	250	노량진동 232-188	노량진동 84-1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37	12	국지 도로	188	노량진동 315-135	노량진동 313-72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소로	1류	4	10	국지 도로	120	노량진동 225-32	노량진동 225-158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소로	2류	4	8	국지 도로	275	노량진동 120-6	노량진동 225-294	일반 도로		동작구고시 2000-45호 2000.10.26	
기정	소로	2류	C	8	국지 도로	59	노량진동 271-32	노량진동 289-42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74호 1978.04.25	
기정	소로	2류	D	8	국지 도로	61	노량진동 256-51	노량진동 294-63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74호 1978.04.25	
기정	소로	2류	6	8	국지 도로	143	노량진동 229-116	노량진동 309-16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소로	3류	3	6		71	노량진동 310-150	노량진동 310-46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 1993.03.12	
기정	소로	3류	A	6		130	대방동 39-1	대방동 68-7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20호 1976.06.02	
기정	소로	3류	6	6~15	국지 도로	238	노량진동 229-21	노량진동 225-196	보행자 우선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 1993.03.12	
기정	소로	3류	7	4		93	노량진동 219-37	노량진동 215-87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 1993.03.12	
기정	소로	3류	C	4		242	노량진동 83-15	노량진동 92-2				사도
기정	중로	2류	5	15	집산 도로	745	노량진동 240-79	대방동 23-58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2류	9	15	국지 도로	645	상도동 453	대방동 45-38	보행자 우선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2류	25	15~20	집산 도로	1,325 (292)	대방동 49-6	상도동 366-5	일반 도로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12.26	등용길
기정	소로	3류	B	6	국지 도로	34	대방동 32-1	대방동 68-87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64호 1981.07.11	
기정	소로	3류	10	5~6	특수 도로	25	대방동 11-25	대방동 11-8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10호 2010.06.03	
기정	중로	2류	1	15~20	국지 도로	944 (163)	노량진동 310-154	노량진동 215-334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60호 1993.03.12	만양로 3길
기정	소로	3류	12	6~8	국지 도로	238	대방동 44-200	대방동 43-2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 2017.02.02	

※ ()안은 지구 내 연장

(2) 공간시설(변경)

☐ 공 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	노량진근린공원	근린 공원	노량진동 225-291일대	409,661.0 (46,626.0)	감) 11.0 (감) 11.0)	409,650.0 (46,615.0)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 1940.03.12	()는 지구 내
지 구 내	①	노량진근린공원 (대방공원)	근린 공원	대방동 226-7번지	6,881.6	-	6,881.6	-	-
	②	노량진근린공원 (송학공원)	근린 공원	노량진동 225-291번지일대	11,080.0	-	11,080.0	-	-
	③	노량진근린공원 (중앙공원)	근린 공원	대방동 44-29번지일대	11,683.0	감) 11.0	11,672.0	-	-
	④	노량진근린공원 (생태공원)	근린 공원	노량진동 252-3번지일대	15,746.4	-	15,746.4	-	-
	⑤	노량진근린공원 (노들공원)	근린 공원	노량진동 119-171번지일대	1,235.0	-	1,235.0	-	-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 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①	공공공지	노량진동 329-12번지일대	178.0	-	178.0	동작구고시 제2003-94호 (2003.8.30)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공공청사(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①	공공청사	치안센터	대방동 45-4일대	400.0	-	400.0	서울특별시고시 제210호 (2010.6.3)	-
기정	②	공공청사	노량진2동 주민센터	노량진동 294-41일대	3,368.0	-	3,368.0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
기정	④	공공청사	도시재생 지원센터	대방동 45-4일대	618.0	-	618.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 (2017.02.02)	-

☐ 체육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①	체육시설	체육관	노량진동 225-171일대	1,997.0	-	1,997.0	-	

※ 노량진3·4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청사(일자리+복지센터) 폐지 및 체육시설(체육관) 신설

☐ 학 교(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①	영화초교, 영등포 중고교	학교	대방동 13-2번지일대	47,332.0	-	47,332.0	서울시고시 제178호 (1978.4.26)	-
기정	②	노량진초교	학교	노량진동 237번지일대	12,061.0	-	12,061.0	서울시고시 제399호 (1978.8.08)	-

☐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①	사회 복지시설	-	노량진동 224-6	159.0	-	159.0	동작구고시 제2008-33호 (2008.7.31)	-

☐ 문화시설(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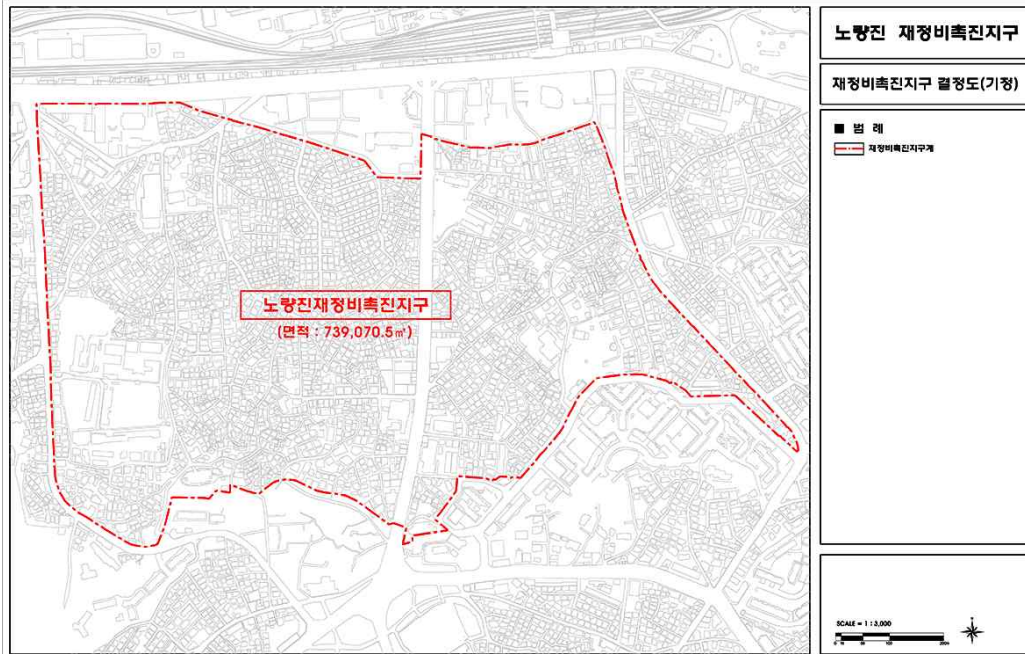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①	문화시설	문화시설	노량진동 314-10번지일대	5,571.0	-	5,571.0	-	-

라.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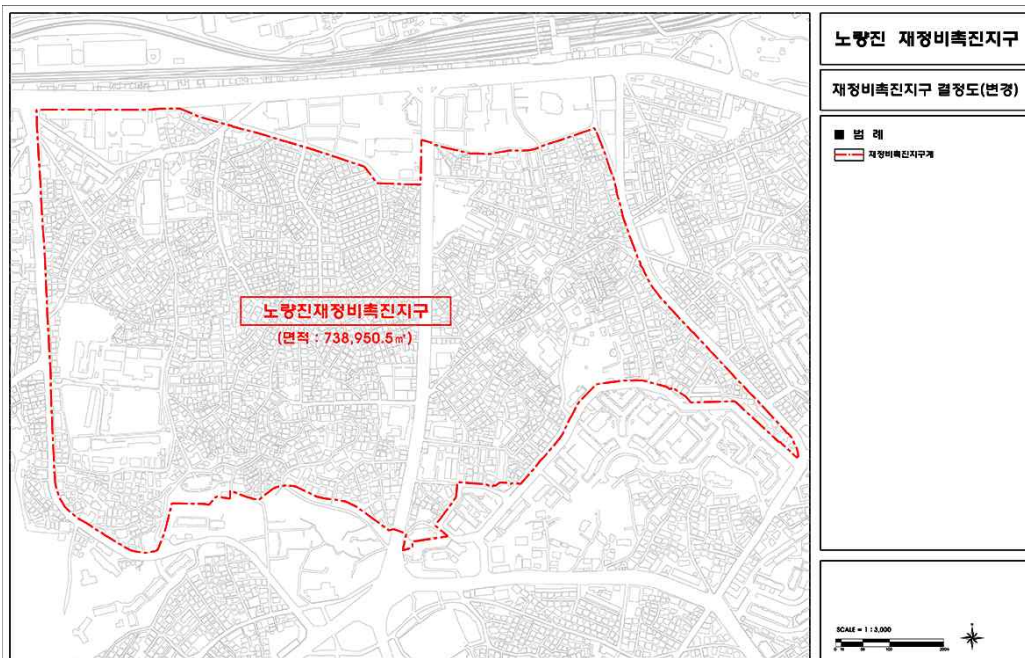
마.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4) 및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02-820-9814)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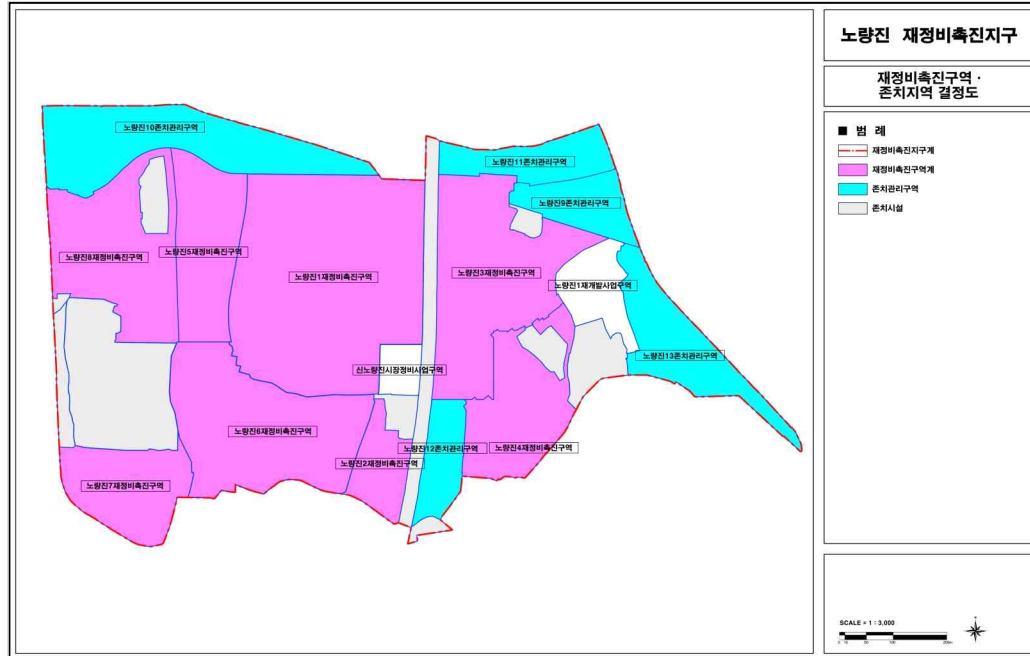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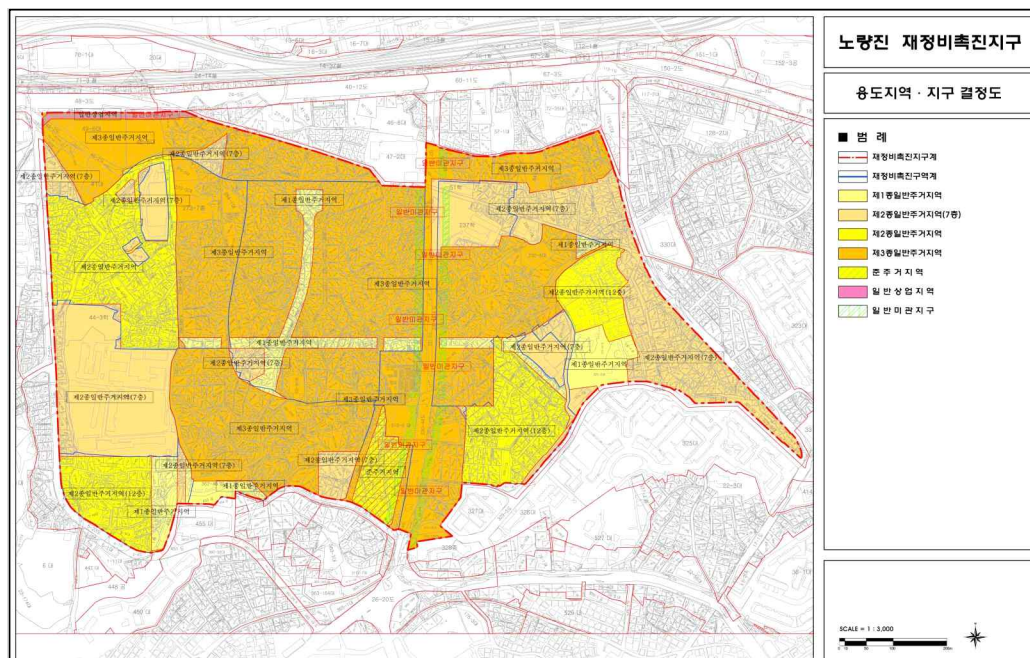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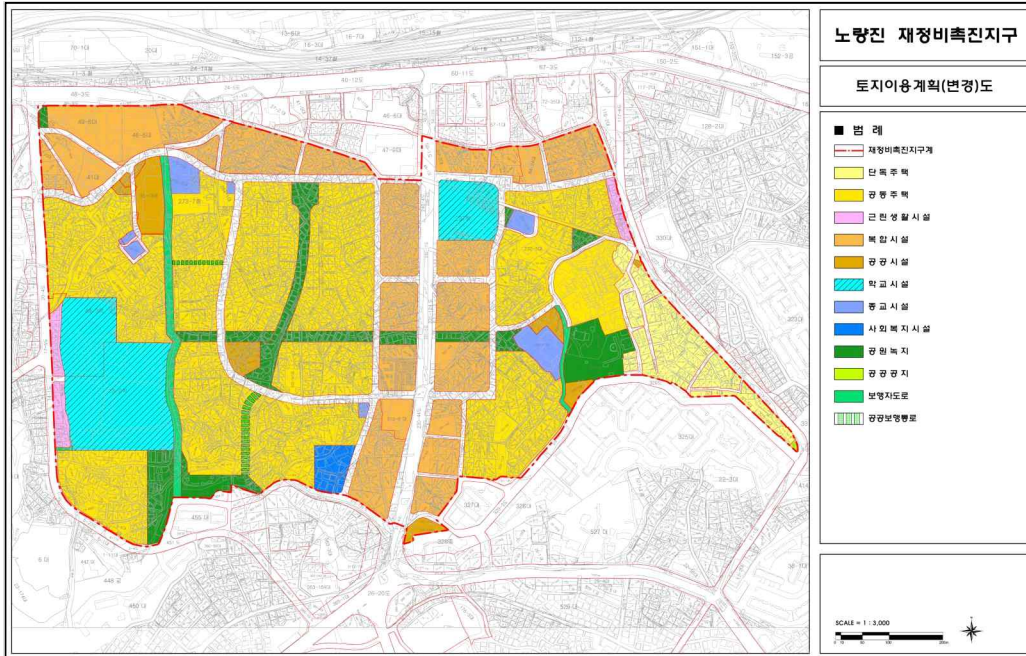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존치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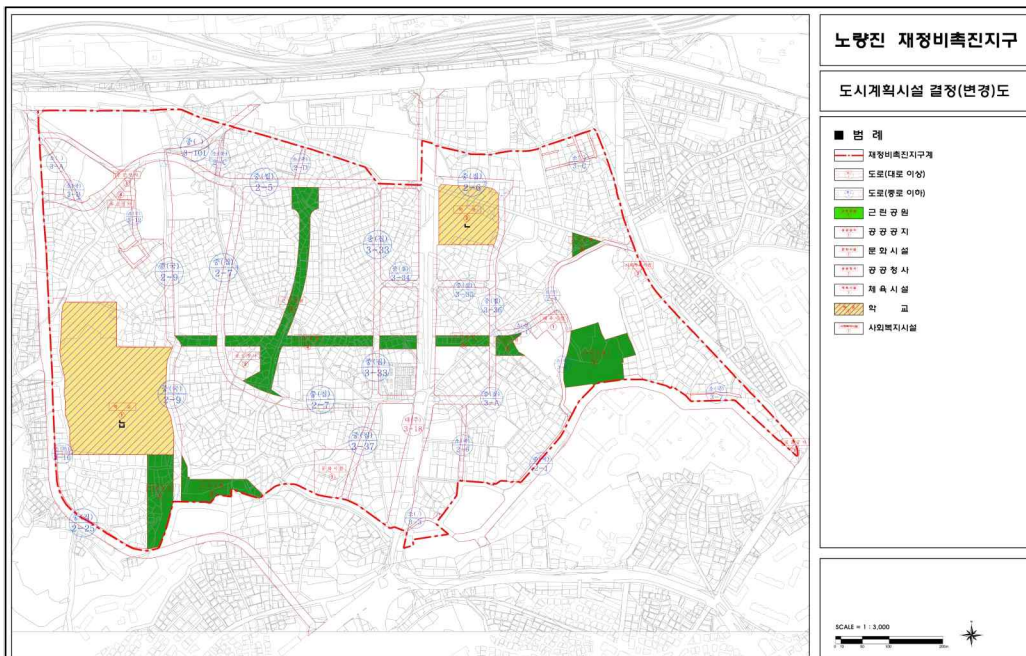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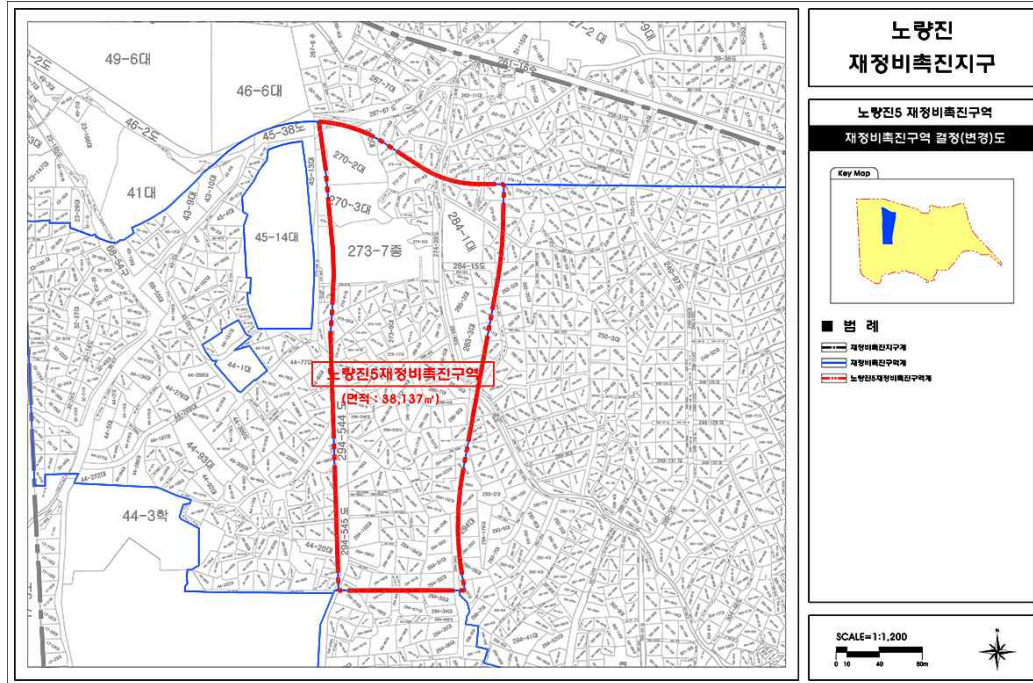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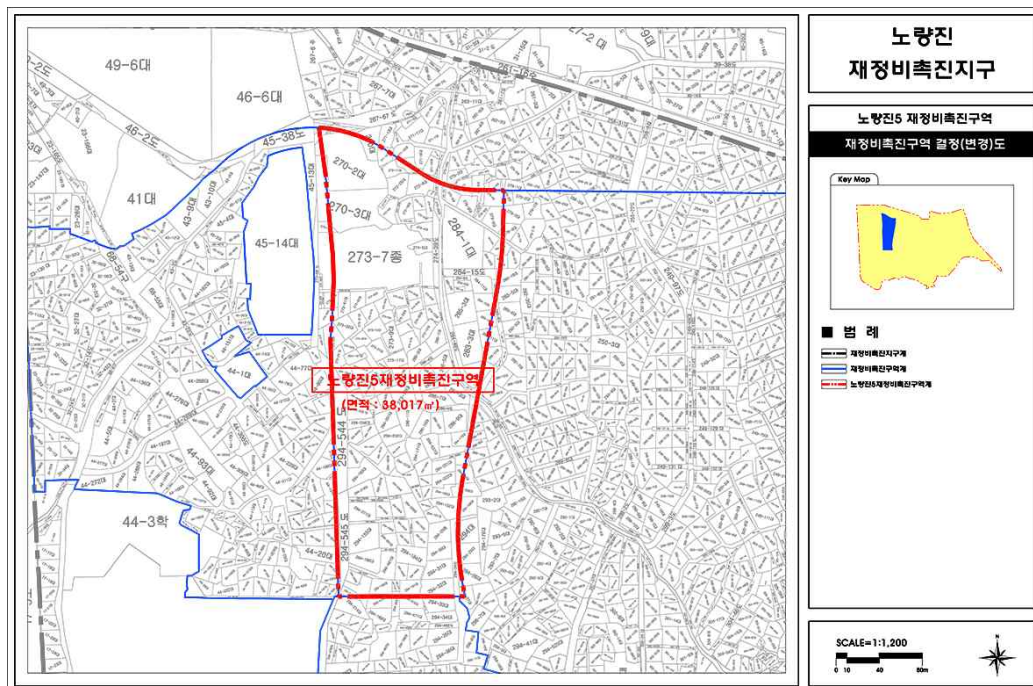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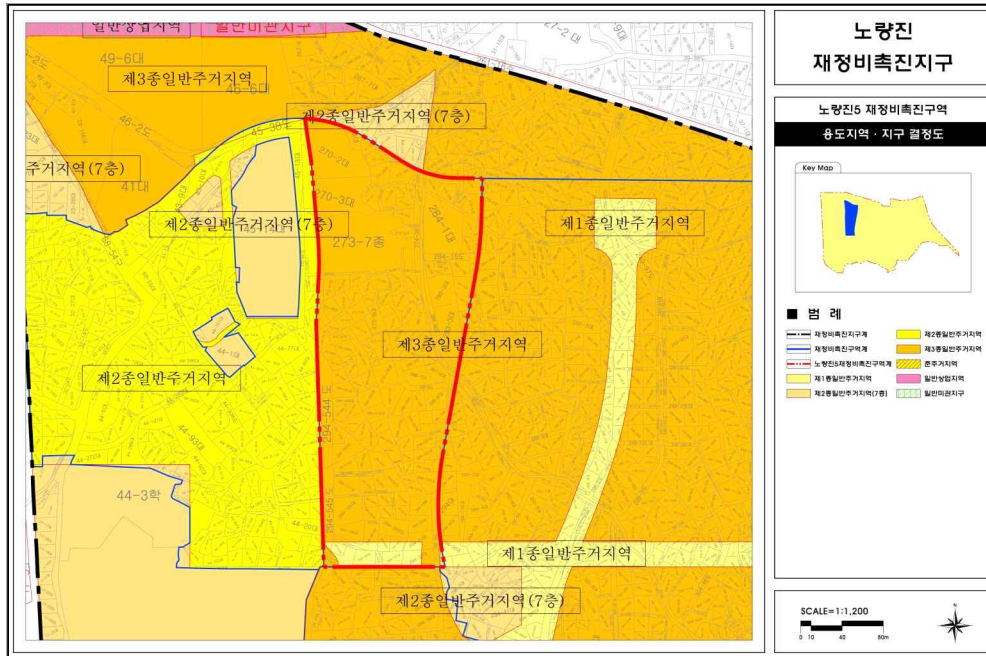
■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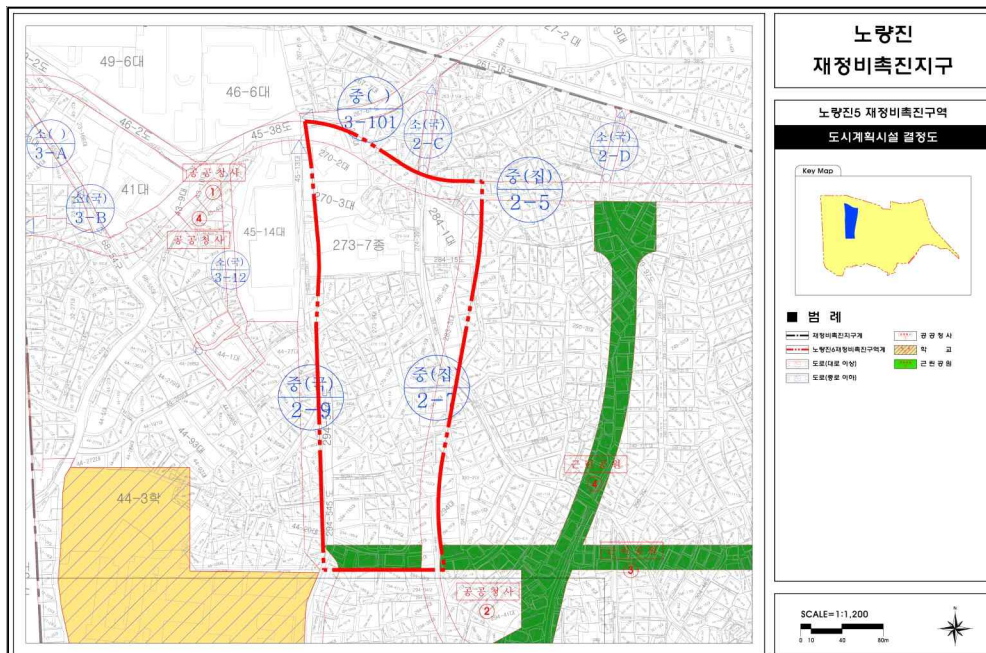
■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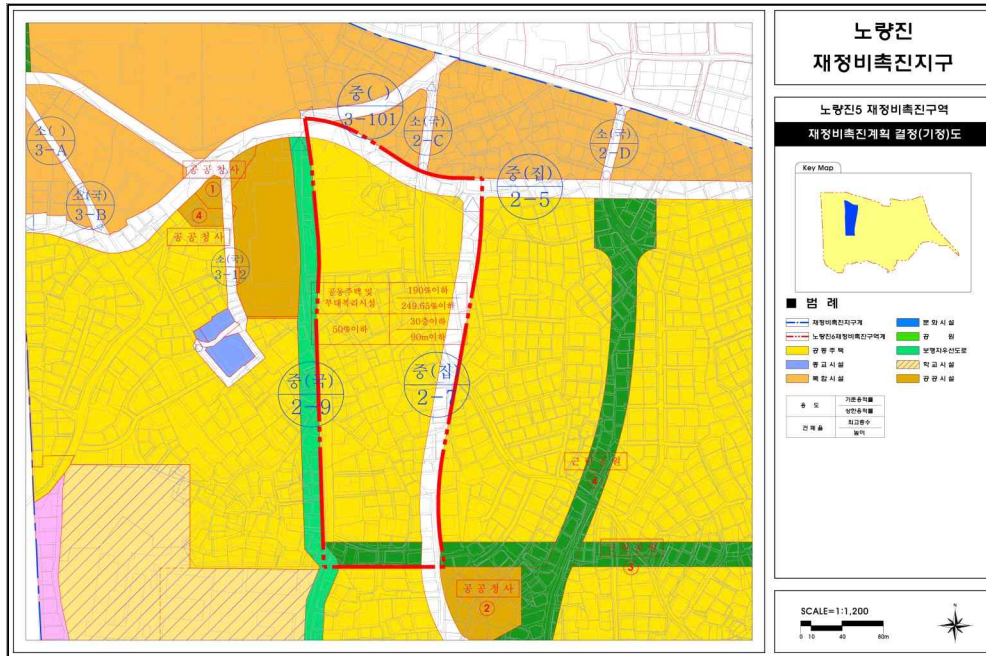
■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5호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건설부고시 제25호(1977.2.4.), 건설부고시 제426호(1978.12.29.)호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신설)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공원 내 현황도로를 정비하여 공원으로 복원하고, 도로, 주차장 등을 신설하여 지역 내 편익을 증대코자 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장충단	근린공원	중구 장충동2가 산6-6 일원	289,209	증)2,961.4	292,170.4	총고 제208호 (1940.3.12.)	도로, 주차장 중복결정

○ 변경 사유서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장충단 근린공원	• 면적 증가 : 2,961.4㎡	•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심의(2016.3.2.)결과에 따라 현황도로 1개소 폐쇄 및 공원 추가조성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63	30~65	주간선 도로	4,100	장충체육관	압구정동 (대2-30)	일반 도로	건고426호 (1978.12.29.)	-
변경	대로	2	63	30~65	주간선 도로	4,100 (91) ¹⁾	장충체육관	압구정동 (대2-30)	일반 도로	건고426호 (1978.12.29.)	일부구간확장 공원 중복결정 (A=132.9㎡)
기정	대로	2	98	22~30	보조간선 도로	1,600	장충체육관	한남사거리	일반 도로	건고25호 (1977.2.4.)	-
변경	대로	2	98	22~36	보조간선 도로	1,600 (137) ¹⁾	장충체육관	한남사거리	일반 도로	건고25호 (1977.2.4.)	일부구간확장 공원 중복결정 (A=548.2㎡)
신설	중로	3	71	12	국지도로	42	장충동2가 (대2-98)	장충동2가 202번지	일반 도로	-	주차장 중복결정 공원 중복결정 (A=512.9㎡)
신설	중로	3	72	14~16	국지도로	65	장충동2가 (대2-63)	장충동2가 202번지	일반 도로	-	-

1) 대로2-63호 및 대로2-98호 중 ()는 완화차로 확장되는 구간임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대로2-63	대로2-63	- 일부구간 도로폭원 확장 - 장충체육관사거리 인근 도로 일부 확장 (최대 3.9m 확장) - 공원 중복결정 : 132.9㎡	완화차로 및 보도확보를 위해 일부 확장
대로2-98	대로2-98	- 일부구간 도로폭원 확장 - 장충체육관사거리 인근 도로 일부 확장 (최대 7.9m 확장) - 공원 중복결정 : 548.2㎡	완화차로 및 보도확보를 위해 일부 확장
-	중로3-71	- 도로 신설 : 512.9㎡ - 주차장 중복결정 : 512.9㎡ - 공원 중복결정 : 512.9㎡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중로3-72	도로 신설 : 1,037.5㎡	현재 주출입구의 공원화에 따른 주출입구 변경 및 기존 현황도로의 권원확보 요청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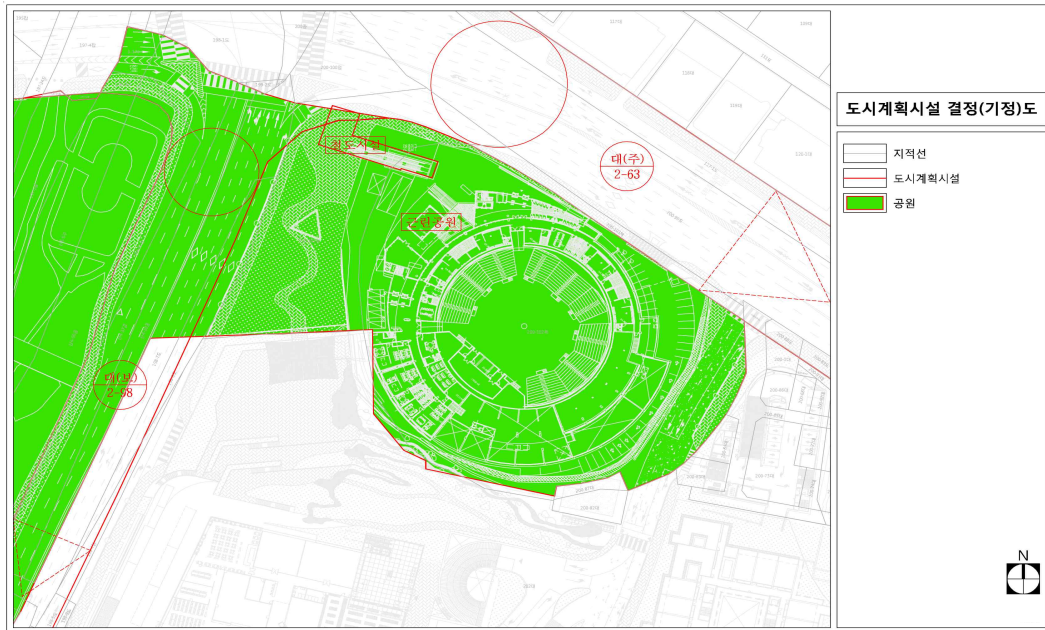
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	-	증)3,757.2	3,757.2	-	- 중복결정 - 지상 : 공원 - 지하 :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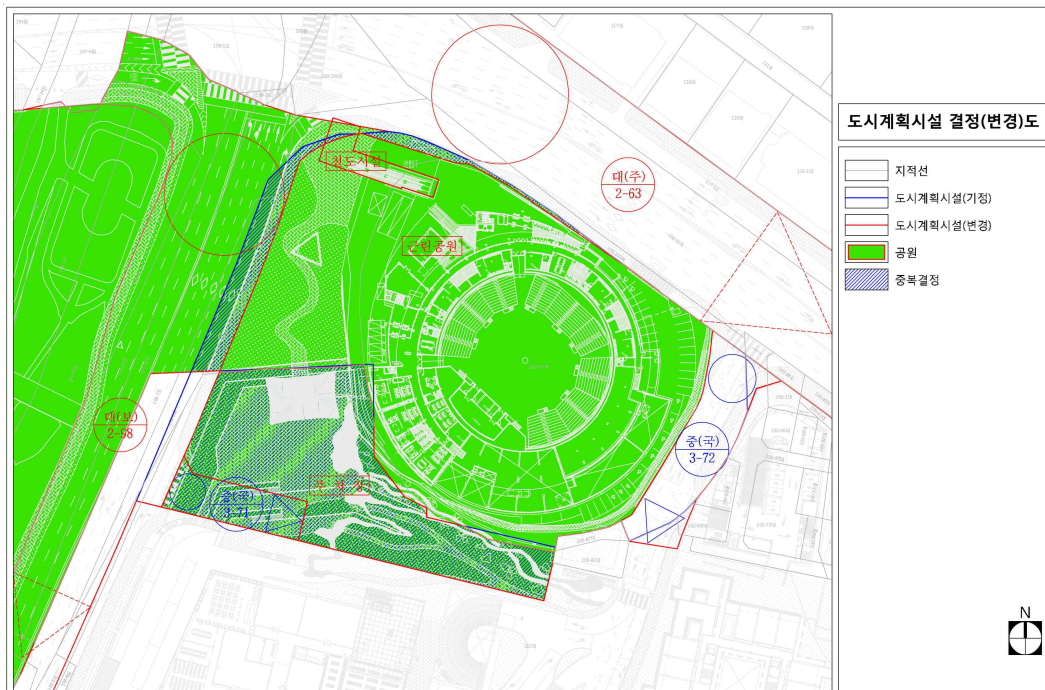
○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3,757.2㎡ - 도로 중복결정 : 512.9㎡ - 공원 중복결정 : 3,757.2㎡	부족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신설

다. 지형도면 : 불임참고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불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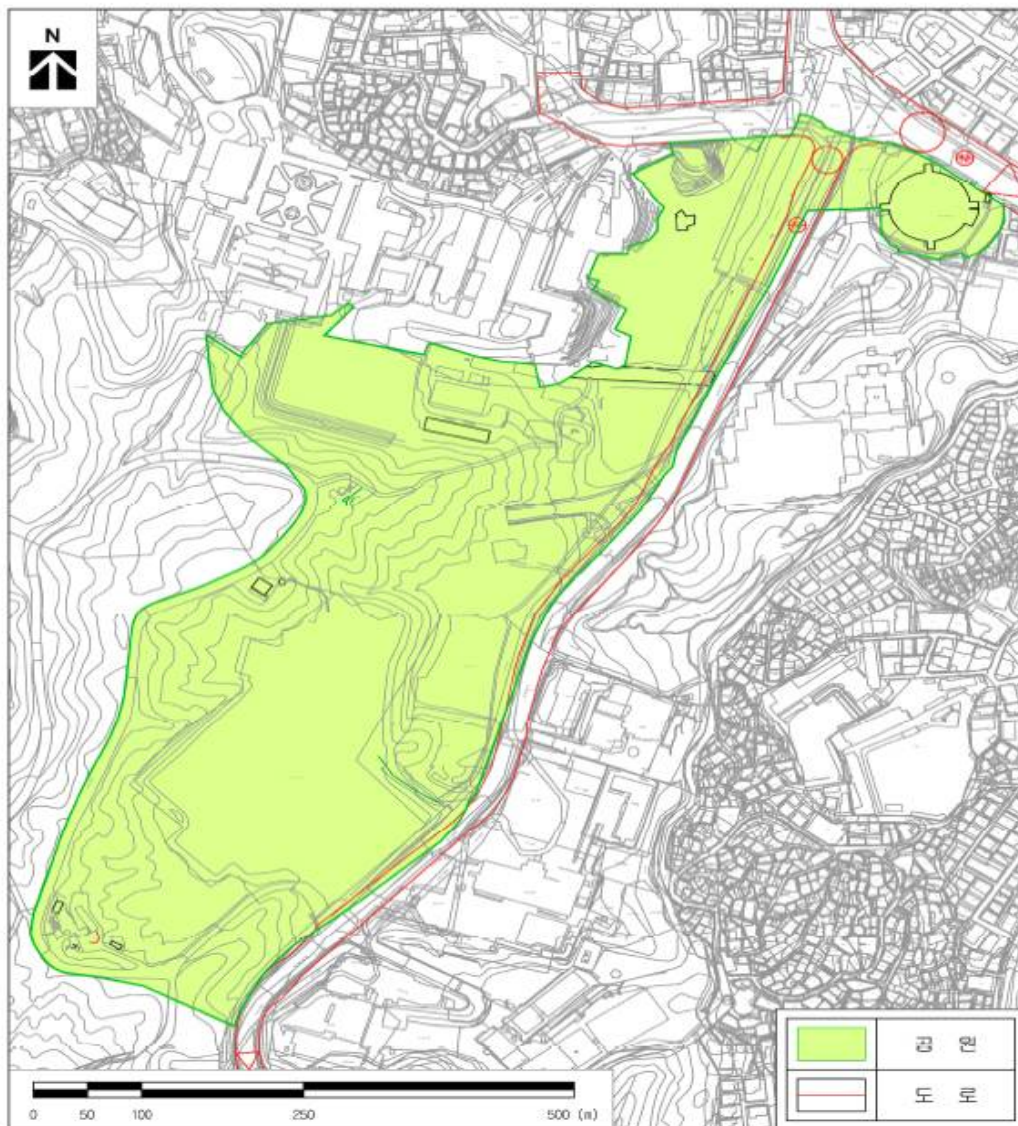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58) 및 중구청 도심재생과(☎ 3396-5757)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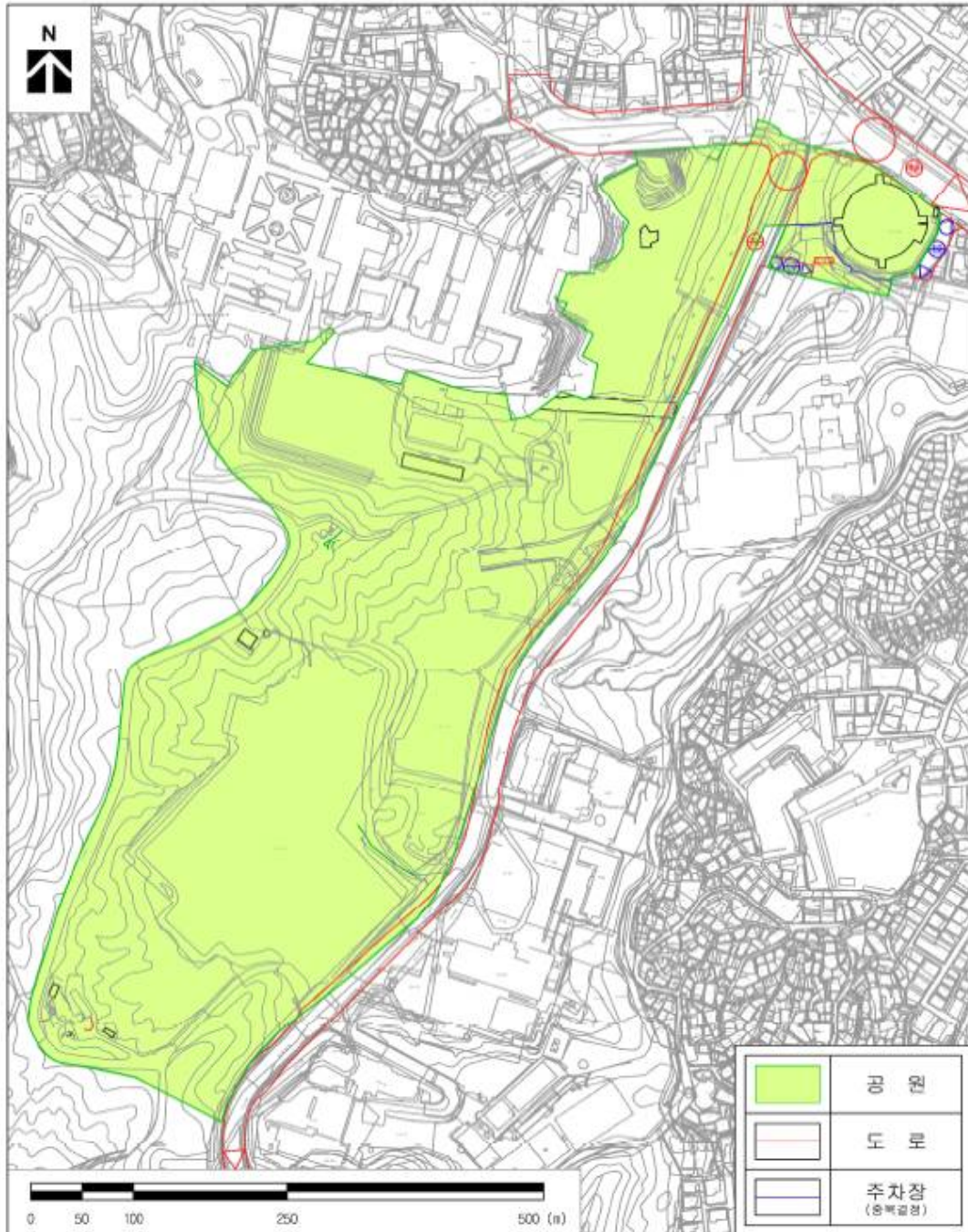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기정) 지형도

(위치 :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 일대, 축척 : 1/5,000)



도시계획시설(변경) 지형도

(위치 :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 일대, 축척 : 1/5,000)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8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 1) 업체명 : (주)엔비로
- 2) 대표자 : 최 경 원
-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44 크레스코빌딩 309호 (☎ 02-473-7090)
- 4) 업종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 5) 지정번호 : 수질환경[제49호]
- 6) 지정일자 : 2019. 1. 16.

2.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 1) 업체명 : 대한환경안전기술
- 2) 대표자 : 서 청 민
-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422-1호)
(☎ 02-2169-2589)
- 4) 업종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 5) 지정번호 : 수질환경[제50호]
- 6) 지정일자 : 2019. 1. 1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30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9호(2016.5.19.) 도시계획시설(도로-보행자전용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호(2017.1.19.)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637호(2018.7.19.)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사업 공사완료 공고된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도시관리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포함)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는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 수령인, 미 통지인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9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서울역 고가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0.3	특수 도로	810	남대문로5가 281	만리동1가 83	보행자 전용도로	-	-	
변경	소로	1		10.3	특수 도로	810	남대문로5가 281	만리동1가 83	보행자 전용도로	-	-	서울로(고가)~ 청파로간 연결 시설물 선형변경

○ 도로 변경결정 사유서

- 서울로(고가)~청파로간 연결시설물 설치(기존엘리베이터에 나선형 계단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변경

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1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서울로~청파로가 연결로 설치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① 서울역고가도로(보행자전용도로) : 나선형연결계단(폭1.4m,연장26.2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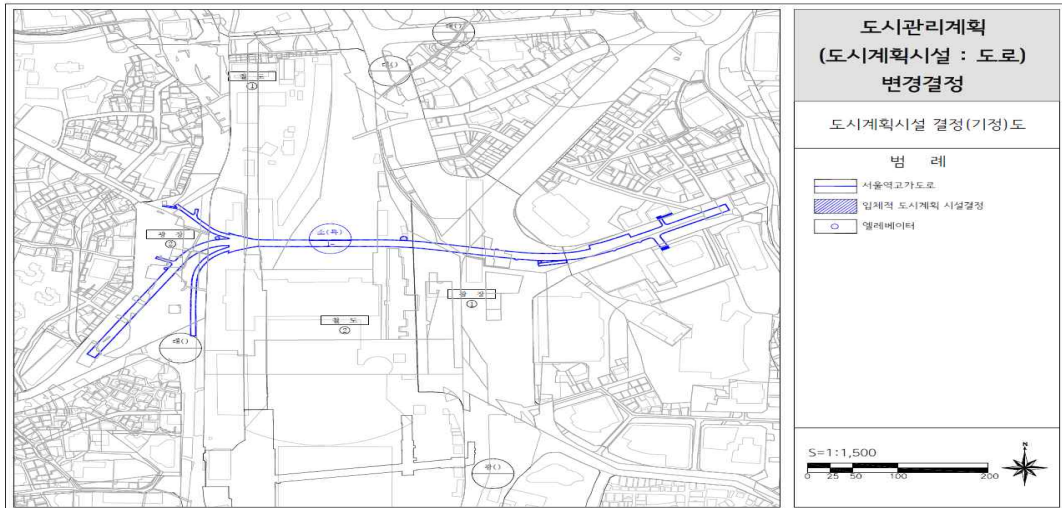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다.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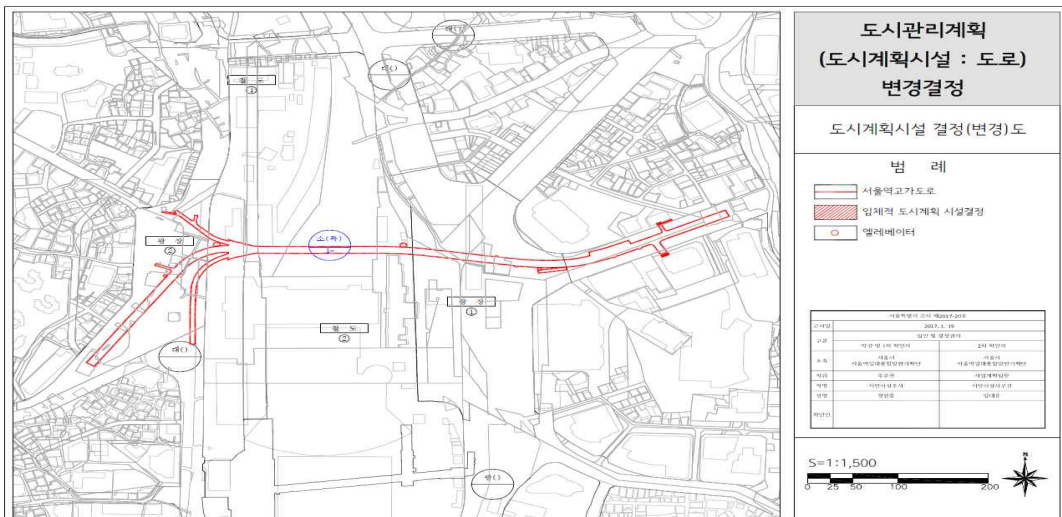
라.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도면 및 서류 등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중구 퇴계로18, 대우재단빌딩 8층 803호)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정책과 (☎ 02-2133-44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 서울역고가도로) 변경결정 도면

○ 기정



○ 변경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서울역 고가도로)

○ 토지조서(사용)

연번	위 치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구	행정동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합 계					125,562.50	10,720.4	21	10,741.4						
1	중구	남대문로5가	67-4	도로	1,312.4	156.2		156.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	중구	남대문로5가	73-2	도로	477.6	196.6		196.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중구	남대문로5가	74-1	도로	419.8	158.7		158.7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중구	남대문로5가	75-1	도로	142.1	4.0		4.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중구	남대문로5가	280	도로	482.6	205.0		205.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	중구	남대문로5가	281	도로	409.9	91.6		91.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7	중구	만리동1가	5	도로	412.6	1.9		1.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8	중구	만리동1가	5-1	도로	376.9	165.7		165.7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9	중구	만리동1가	12-2	도로	832.4	215.9		215.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0	중구	만리동1가	12-3	도로	506.1	96.8		96.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중구	만리동1가	12-4	도로	100.2	11.1		11.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2	중구	만리동1가	15-3	도로	56.2	0.8		0.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3	중구	만리동1가	17-2	도로	145.5	6.9		6.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4	중구	만리동1가	22-32	도로	15.9	15.9		15.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5	중구	만리동1가	22-37	철도	20.8	12.6		12.6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16	중구	만리동1가	22-43	도로	5.0	1.9		1.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7	중구	만리동1가	22-44	철도	74.4	44.5		44.5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18	중구	만리동1가	83	도로	534.8	123.1		123.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9	중구	봉래동2가	122	철도	4,696.9	54.5		54.5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0	중구	봉래동2가	122-15	철도	20,897.5	319.5		319.5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1	중구	봉래동2가	122-14	철도	3,589.8	161.7		161.7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2	중구	봉래동2가	122-16	철도	19,570.7	1,026.5		1,026.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3	중구	봉래동2가	124	도로	1,894.2	4.4		4.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4	중구	봉래동2가	124-1	도로	613.1	142.5		142.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5	중구	만리동1가	22-36	철도	16.5	14.7		14.7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26	중구	중림동	106-4	도로	931.9	183.3		183.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연번	위 치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구	행정동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7	중구	충림동	106-3	도로	589.8	68.2		68.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8	중구	충림동	106-6	도로	1,632.6	62.1		62.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9	용산구	서계동	217-2	도로	2,648.9	109.2		109.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0	중구	남대문로5가	84-15	도로	15,607.4	2,529.7		2,529.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연결통로 (호텔마 누) 엘리베이 터, 에스컬레 이터
31	중구	남대문로5가	520	도로	3,769.70	581.8		581.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연결통로 (대우재 단)
32	중구	남대문로5가	526-1	도로	559.4	26.6		26.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연결통로 (대우재 단)
33	중구	만리동1가	1	도로	11,043.8	1,153.2		1,153.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4	중구	만리동1가	22-1	도로	6,942.6	1002.1		1002.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엘리베이 터
35	중구	봉래동2가	122-11	철도	10,063.0	956.3	증)21	977.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엘리베이 터 변경
36	중구	봉래동2가	122-17	철도	10,420.6	771.1		771.1	한국철도 공 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엘리베이 터
37	중구	남대문로5가	526	대지	3,081.1	18.9		18.9	재단법인 대우재단외 1인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	주식회 사 국민은 행	서울특별 시 중구 남대문로 84	구분 지상권	연결통로 (대우재 단)
38	중구	남대문로5가	84-16	대지	667.8	24.9		24.9	호텔마누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84-16			구분 지상권	연결통로 (호텔마 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306호**

공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공고)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장

☐ 공인등록

- 공인등록 사유 : 조직개편
- 최초 사용일자 : 2019년 1월 28일
- 공인등록 내용

공 인 명	회 계 직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 등 록 일 자	비 고
영동대로복합 개발추진단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영동대 로복합개발 추진단일상 경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19.1.28.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영동대 로복합개발 추진단분 임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316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연번	부의 안건명	주관 부서
동의안 (1건)	1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동의안	서울주택도시공사
의견 청취안 (2건)	1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도시활성화과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과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317호

<생전예수재>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4항 및 동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생전예수재>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예 고 일 : 시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생전예수재>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

<생전예수재>는 조선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전통과 풍속으로 정착하였고, 서울의 대표적인 윤달 풍속이었다.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윤달 풍속에 장안의 여인들이 줄지어 사찰에 찾아가 돈을 시주하는데 이 공덕으로 극락왕생한다고 믿는다.” 하였다. 동국세시기의 내용은 서울지역 사찰에서 행해진 생전예수재를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유교문화가 지배하던 조선시대에도 도성 주변의 사찰들은 불교의례의 명맥을 계승시켜왔다. 서울지역 사찰들은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토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생전예수재의 명맥을 유지하며 우리 전통문화의 세시풍속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였다.

서울의 예수재는 의법에 맞도록 입재로부터 6재를 마치고 7재 때 본 예수재를 지냄으로써 전통적인 예수재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행하던 대표적인 무형유산이라는 점에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로 보전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3. 예고기간 : 공고일 부터 30일

4. 예고사유

서울의 <생전예수재>는 온전한 예수재의 법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단체를 통해 전승되는 무형유산이라는 점에서 보유자 없는 단체종목으로 지정하고자 함.

5. 의견제출 : 방문제출, 팩스, 또는 우편 제출(공고일부터 30일간)

① 전화 : (02)2133-2616(신영문 주무관) ② 팩스 : (02)768-8873

③ 우편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451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321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13조 규정에 의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공람하오니, 관련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삼성 IC) ~ 성북구 석관동(월릉 IC)
 다. 사업규모 : L = 10.4km (양방향 4차로)
 라. 설계속도 : V = 80km/hr
 마. 사업 제안자 : (가칭)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
 바. 사업추진방식 : BTO(Build Transfer Operate)
 사. 사업기간(예정)
 - 건설기간 : 착공 후 5년
 - 운영기간 : 개통 후 30년

2. 공람기간·장소·내용

- 가. 공람기간 : 2019년 02월 08일 ~ 2019년 03월 15일 (25일간, 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64), 성동구청 토목과 (☎02-2286-5764)
 광진구청 도로과(☎02-2201-1215), 동대문구청 도로과(☎02-2127-4815)
 중랑구청 도로과(☎02-2094-2693), 성북구청 도로과 (☎02-2241-3542)
 강남구청 도로관리과(☎02-3423-655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람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3. 관계도서 : 공람장소 비치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게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게시

4.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구분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남구
일시	2월21일(목) 19:00	2월25일(월) 18:00	2월19일(화) 19:00	2월20일(수) 17:00	2월18일(월) 14:00	2월27일(수) 16:00
장소	성동구 성수2가3동 주민센터	광진구 중곡3동 주민센터	동대문구 회경2동 주민센터	중랑구 면목5동 주민센터	성북구 석관동 주민센터	강남구 KRA프라자 2층

5.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등

-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 끝난후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 서면 제출(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작성)
 다. 제출장소 :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si3219@seoul.go.kr, 또는
 팩스 02-2133-0763)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

6. 주민의견 제출서식 : 별첨제재

7.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02-2133-80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

2019. 01



(가칭)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

제1장 요약문

1.1 계획의 내용

1.1.1 계획의 목적

- 새로운 지하도로망 구축 및 지하공간개발을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으로 활용도 높은 입체도시 구현
- 소형차량의 높은 통행비율(소형차 통행비율 90% 이상)을 고려한 소형차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통행효율성 확보
- 수도권 남부지역의 획기적인 접근성 향상으로 영동대로와 동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연계로 강북~강남~동탄~오산의 교통축 확보, 통행수요의 충족 및 교통 애로구간 해소
- 지상도로의 적절한 분산을 통한 혼잡도 및 국지도23호선의 교통지체 완화

1.1.2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실시근거 및 절차

- 본 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 2]」에 의해 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 시기
가.도시의 개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하기 전

- 주) 1. 계획노선은 10.4km의 신설도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법 22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범위(환경영향평가법) : 도로의 건설사업(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등)

1.1.3 계획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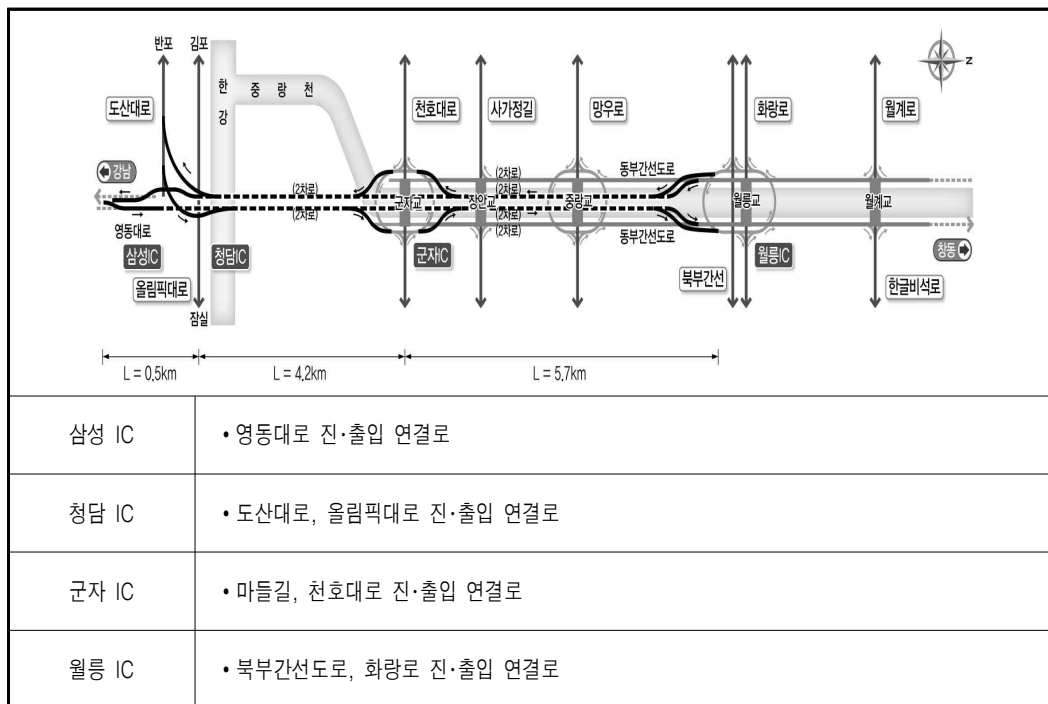
- 계 획 명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삼성~월릉)
- 계획노선 구간
 - 시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삼성 IC)
 - 종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월릉 IC)
- 연 장 : L = 10.4km (양방향 4차로)
- 설계속도 : V=80km/hr
- 추진방식 : BTO(Build Transfer Operate)
- 계획기간
 - 건설기간 : 착공 후 5년
 - 운영기간 : 개통 후 30년
- 사업 제안자 : (가칭)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
- 계획수립 및 승인기관 : 서울특별시



가. 계획의 규모

구 분		사업물량	특기사항
터널	본선	18.4km/2개소 (2차로)	• 안전성 중심의 환기방재시설 계획
	IC	8.7km/4개소 (1차로)	
	합계	27.1km/6개소	
BOX	본선	-	-
	IC	2.21km/4개소 (1차로)	
	합계	2.21km/4개소	
U-TYPE	본선	-	-
	IC	1.49km/4개소 (1차로)	
	합계	1.49km/4개소	
출 입 시 설		4개소	• 삼성IC, 청담IC, 군자IC, 월릉IC
영 업 소		2개소	• 스마트톨링 적용(성수, 군자)
환 기 소		2개소	• 민원 및 경관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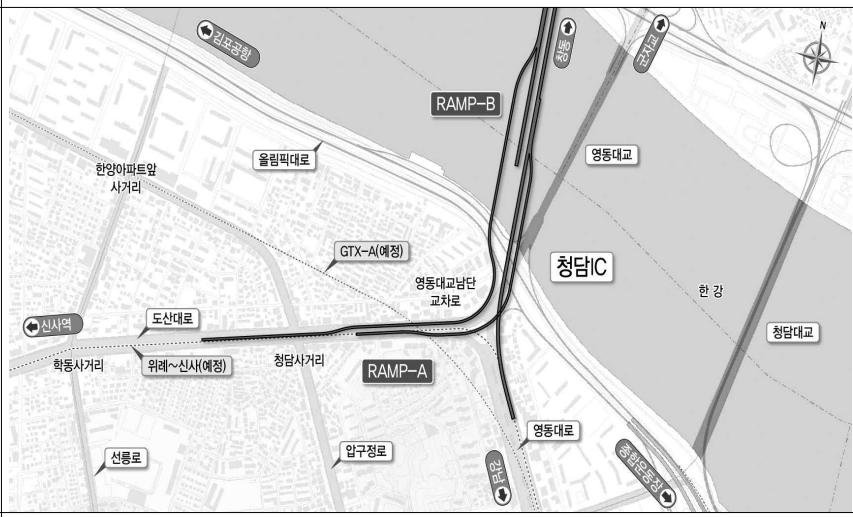
나. 진·출입시설(교차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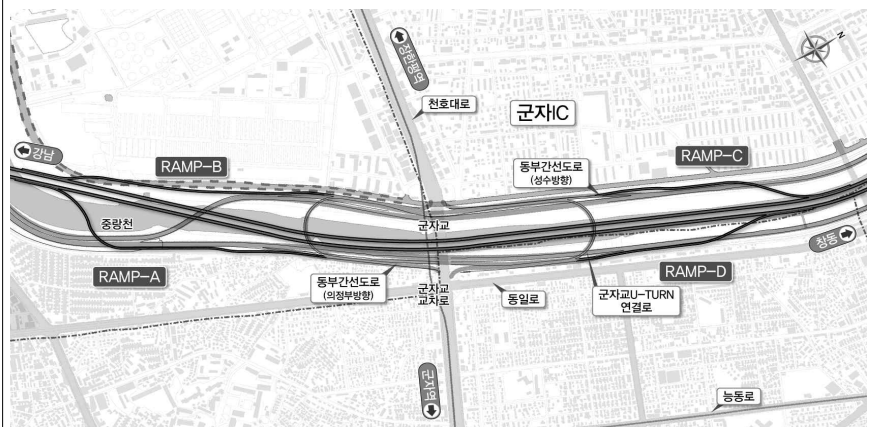
1) 삼성IC

구 분	세 부 설 계 현 황
개 요	• 영동대로 및 장래개발계획(MICE) 이용교통량의 본 사업도로로 효과적인 진출·입을 위한 Up/Down 연결로 설치
형식	• 진출·입 Up/Down
현황도	
기하구조	• 설계속도 : 50km/h • 최소곡선반경(Rmin) : 180m • 최대종단경사(Smax) : 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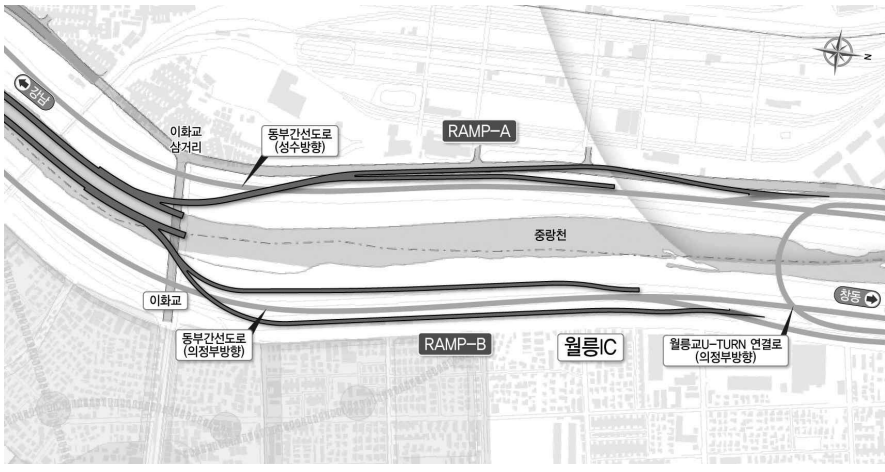
2) 청담IC

구 분	세 부 설 계 현 황
개 요	• 도산대로 이용교통량의 본 사업도로와 효과적인 진출·입을 위한 연결로 설치
형식	• 진출·입 Up/Down
현황도	
기하구조	• 설계속도 : 50km/h • 최소곡선반경(Rmin) : 145m • 최대종단경사(Smax) : 8.95%

3) 군자IC

구 분	세 부 설 계 현 황
개 요	• 기존 군자IC 연결로 지·정체 길이 및 엇갈림을 고려하여 기존 로터리형 연결로를 활용하여 접속
형식	• 진출·입 IC(전방향)
현황도	
기하구조	• 설계속도 : 50km/h • 최소곡선반경(Rmin) : 145m • 최대종단경사(Smax) :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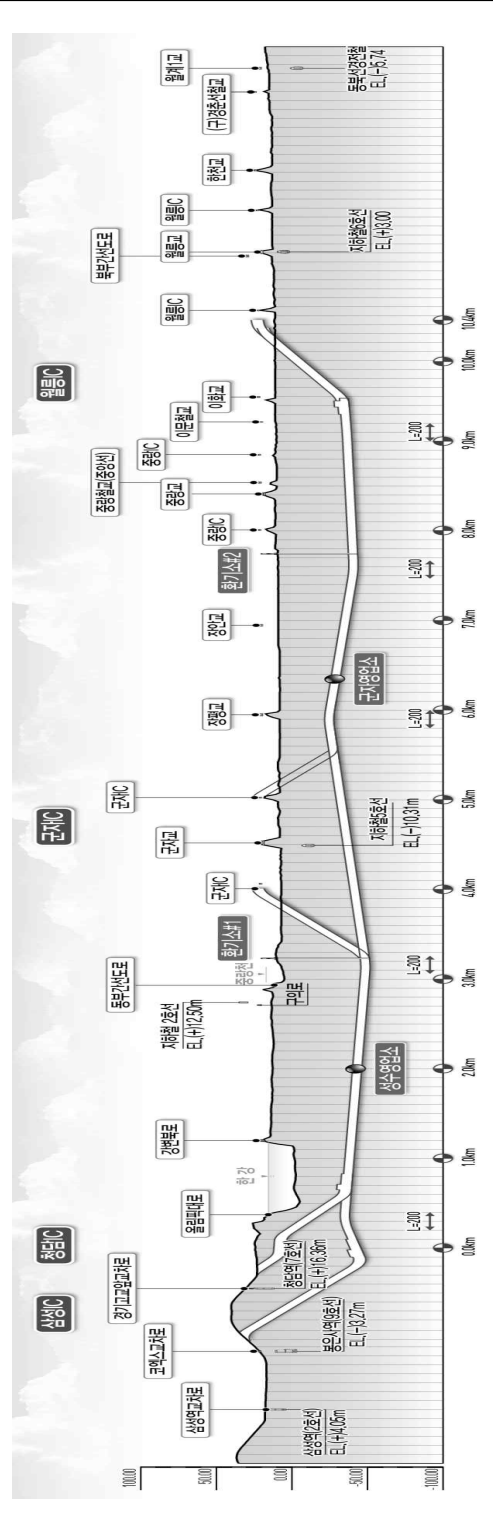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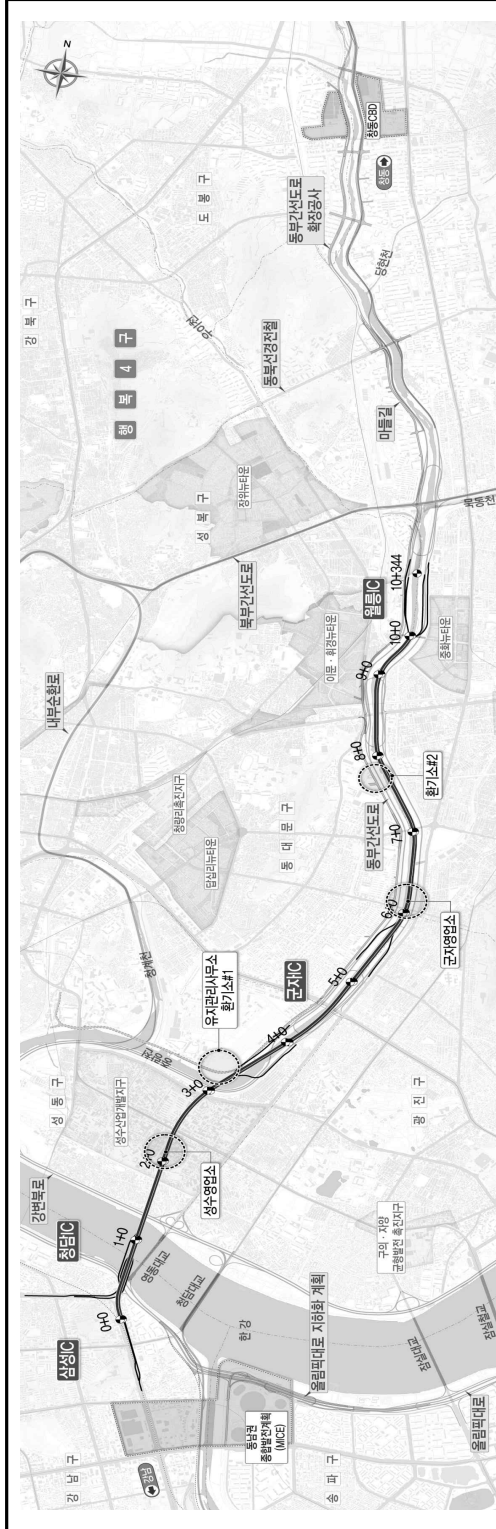
4) 월릉IC

구 분	세 부 설 계 현 황
개 요	• 기존 월릉IC 로터리형 연결로를 활용하여 접속 및 기존 동부간선도로 접속시 교통영향 최소화
형식	• 진출·입 Up/Down
현황도	
기하구조	• 설계속도 : 50km/h • 최소곡선반경(Rmin) : 145m • 최대종단경사(Smax) : 8.07%

다. 영업소 계획

구성기기	성수 영업소		군자 영업소	
	강남방향	창동방향	강남방향	창동방향
통합차로제어기	1	1	1	1
UPS	1	1	1	1
구조물	1	1	1	1
전면카메라	3	3	3	3
후면카메라	3	3	3	3
진입감지기	3	3	3	3
진출감지기	3	3	3	3
통합안테나	6	6	6	6





계획노선 중평면도

1.2 지역개황

1.2.1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전	임 야	대 지	도 로	하 천	기 타
강남구	면 적(㎡)	39,501,308	868,373	6,076,584	16,003,561	6,694,026	4,026,907	5,831,857
	구성비(%)	100.0	22.0	15.4	40.5	16.9	10.2	14.8
광진구	면 적(㎡)	17,063,230	27,059	2,482,458	6,994,516	2,487,176	2,524,435	2,547,586
	구성비(%)	100.0	1.6	14.5	41.0	14.6	14.8	14.9
동대문구	면 적(㎡)	14,215,197	46,533	733,798	7,798,798	2,634,784	574,241	2,427,043
	구성비(%)	100.0	0.3	5.2	54.9	18.5	4.0	17.1
중랑구	면 적(㎡)	18,495,756	453,983	2,767,008	6,932,250	2,726,453	908,518	4,707,544
	구성비(%)	100.0	2.5	15.0	37.5	14.7	4.9	25.4
성북구	면 적(㎡)	24,578,665	64,810	8,201,816	10,251,694	2,730,781	540,011	2,789,553
	구성비(%)	100.0	0.3	33.4	41.7	11.1	2.2	11.3
성동구	면 적(㎡)	16,860,100	190,302	273,264	6,283,723	2,249,576	3,776,405	4,086,830
	구성비(%)	100.0	1.1	1.6	37.3	13.3	22.4	24.3

주) 기타 : 과수원, 목장용지, 제방, 구거, 유택지, 수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지목의 합계임

자료 : 2016년 통계연보, 20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성동구, 동대문구

1.2.2 용도별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미지정
강남구	면 적(㎢)	39,497	24,190	1,676	-	-	13,631	-
	구성비(%)	100.0	61.0	4.0	-	-	35.0	-
광진구	면 적(㎢)	17,075	11,607	193	-	-	5,275	-
	구성비(%)	100.0	67.9	1.2	-	-	30.9	-
동대문구	면 적(㎢)	14,245	13,034	828	-	-	383	-
	구성비(%)	100.0	93.5	4.8	-	-	1.7	-
중랑구	면 적(㎢)	18,531	10,822	357	-	-	7,352	-
	구성비(%)	100.0	58.4	1.9	-	-	39.7	-
성북구	면 적(㎢)	24,621	17,791	397	-	-	6,432	-
	구성비(%)	100.0	72.3	1.6	-	-	26.1	-
성동구	면 적(㎢)	16,804	9,948	473	2,051	-	4,332	-
	구성비(%)	100.0	59.2	2.8	12.2	-	25.8	-

자료 : 2016년 통계연보, 20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성동구, 동대문구

1.2.3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

가.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 현황

구 분		서울특별시	계획노선	비 고
대기 환경	대기환경규제지역	○	○	-
	대기관리권역	○	○	-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	○	경유 0.1%이하, 중유 0.3%이하
수 환경	상수원보호구역	○	×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 약 3.8km
	수변구역	×	×	-
	폐수배출 허용기준 적용지역	○	○	“나” 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	○	한강H
자연 환경	자연공원	○	×	북한산국립공원과 약 7.2km 이격
	습지보호지역	○	×	한강밤섬과 약 10.5km 이격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	-
	생태·경관보전지역	○	×	관악산과 약 9.1km 이격
	야생생물 보호구역	○	×	우면산과 약 5.0km 이격
	백두대간보호지역	×	×	-
	생태자연도	○	○	생태자연도 2, 3등급 권역
	서울시 비오름유형평가	○	○	비오름유형평가도 1~3 등급

나. 자연공원 지정현황

구 분	공 원 명	위 치	면 적(km ²)	이격거리(km)	지 정 일 자
국립공원	북한산	서울, 경기	76.922	7.2	1983.04.02

자료 : 자연공원 지정현황(17년 6월말 기준), 2017, 환경부

다.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구 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서울특별시	-	-	전역

자료 :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환경부고시 제2007-107호

라.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 계획노선이 속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성동구, 동대문구 일원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수질오염총량관리 한강H 유역에 해당되며 대상물질은 BOD, T-P인 것으로 조사됨

1.2.4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계	대기(가스·먼지·매연 및 악취)						수질(폐수)						소음 진동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강남구	194	3	-	5	48	138	205	-	1	3	5	169	1
광진구	39	-	-	1	17	21	51	1	-	-	4	46	-
동대문구	37	-	-	1	12	24	68	-	-	-	5	63	3
중랑구	30	-	-	-	4	26	82	-	-	-	-	79	1
성북구	32	-	-	1	12	19	70	-	-	2	1	67	-
성동구	234	-	1	1	24	208	318	1	1	1	2	313	100

자료 : 2016년 통계연보, 20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성동구, 동대문구

1.3 평가항목·범위 설정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선정사유 및 기준	평가대상지역범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자 연 환경의 보 전	생 물 다 양 성		• 각종 보호지역 및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전대책 수립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서 식 지 보 전		• 생물서식지 보전대책 수립		
	지 형 및 생 태 축 의 보 전		• 계획 수립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 생태축 보전대책 수립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주 변 자 연 경 관 예 미 치 는 영 향		• 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변화 영향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수 환 경 의 보 전		•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 강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수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 수립 • 운영시 오·폐수에 의한 영향 및 저감대책 수립	계획노선 및 하류수계	공사시 운영시
생 활 환경의 안정성	환 기 부 합 성	기 상	• 사업시행으로 인해 기상의 영향이 예상 및 기초자료가 되는 지역	서울기상 관측소	2008~2017년
		대 기 질	• 계획수립으로 인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 여부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공사장비로 인한 오염발생으로 인한 영향 • 운영시 장래교통량으로 오염물질 증가에 따른 영향	계획노선 및 경계로부터 1.0km	공사시 운영시
		온 실 가 스	• 공사장비 가동 및 운영시 연료사용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변화 예상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토 양	•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 여부 • 건설장비 및 이용차량에 의한 영향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소 음 · 진 동	•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 여부 • 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영향 • 운영시 교통량에 따른 소음영향	계획노선 및 경계로부터 0.3km	공사시 운영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공사인부 및 장비투입에 따른 폐기물 발생, 계획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영향 • 운영시 폐기물 처리계획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오수 및 폐기물 등의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검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선정사유 및 기준	평가대상지역범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 화 성	환경 친 화 적 토 지 이 용	• 계획시행 전 · 후의 토지이용 현황 및 변화 • 편입토지 지장물로 인한 영향	계획노선 편입예상지역	운영시
	인 구 및 주 거	• 공사시 및 운영시 인구 및 주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1.4 계획의 적정성

- 본 계획노선의 사업시행시 실현가능한 대안으로서 계획비교와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검토하였음

1.4.1 대안의 개요

구 분			대 안 검 토 내 용
계획 미수립 (No action)			• 강북에서 강남, 수도권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 저하 • 장래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교통 네트워크 미비 • 경부고속도로 및 주변도로의 교통분담 효과 미비 • 중량천 복원으로 인한 강북주민 삶의 질 향상도미 미비
계획 수립	한강 통과 구간	대안 1	• 한강통과 연장 최소 및 고층건물(엘루이 호텔 등) 하부통과 배제 •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공사비 보통
		대안 2	• 한강통과 연장이 길고, 한강 남단 교차로 지점 고층건물(엘루이 호텔 등) 하부통과 •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공사비 고가
	중량천 통과 구간	대안 1	• 연결로 길이 증가로 방재측면에서는 다소 불리 • 공사비가 보통 • 중량천 저축 배제로 환경오염 측면 우수, 예상민원 사전 해소
		대안 2	• 연결로 길이 축소로 방재측면에서는 유리 • 공사비가 고가 • 우기시 등 공사제한 발생 • 공사중 민원과 수질영향 등 환경오염 우려

1.4.2 대안 검토 및 선정

가. 한강 통과구간(청담IC~군자IC)

구 분		비 교 1 안	비 교 2 안
노선개요		한강구간 직선 통과	한강구간 곡선 통과
개 요 도			
연 장		L = 2.9km	L = 3.0km
최소곡선반경		R = 1,300m	R = 800m
최대종단선형		S = 2.6%	S = 2.6%
개략공사비		2,850억원	3,020억원
장 · 단 점	기술적측면	• 올림픽대로 지하화 구간과 이격 ➡ 전방향 접속 우수 • 한강 직선통과로 시공성 우수 • 연결로 접속지점 직선계획 ➡ 운전자 주행성·시인성 우수	• 올림픽대로 지하화 구간과 이격 ➡ 전방향 접속 우수 • 한강 곡선통과로 시공성 보통 • 연결로 접속지점 곡선계획 ➡ 운전자 주행성·시인성 보통
	사회적측면	• 기존도로(영동대로, 도산대로, 올림픽대로) 하부통과 ➡ 민원 발생 사전 해소 • 성수산업개발 진흥지구 계획도로 인접 하부 통과 ➡ 토지이용계획 일부 조정	• 한강 남단 고층건물(엘루이 호텔 등) 하부 통과 ➡ 민원 발생 예상 • 성수산업개발 진흥지구 계획도로 하부 통과 ➡ 토지이용계획 준용
	경제적측면	• 한강 통과 터널 연장 최소 및 기존도로 하부 통과 ➡ 공사비 보통	• 한강 통과 터널 연장 증가 및 고층건물 하부 통과 ➡ 공사비 고가
	환경적측면	• 고층건물 하부통과 배제 ➡ 민원 발생 사전 해소	• 고층건물 하부 통과 ➡ 예상 민원 발생
선정		○	
검토결과		• 비교 2안은 한강통과 연장이 길고, 한강 남단 교차로 지점 고층건물(엘루이 호텔 등) 하부통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공사비가 고가임 • 따라서 한강통과 연장 최소 및 고층건물(엘루이 호텔 등) 하부통과 배제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공사비가 보통인 비교1안이 타당함	

나. 중랑천 통과구간(군자IC~월릉IC)

구 분		비 교 1 안	비 교 2 안
노선개요		• 중랑천 하부 대심도 터널로 통과 • 본선 심도 지하 50m	• 중랑천 고수부지 개착박스로 통과 • 개착박스 토피고 2m 이상
개 요 도			
연 장		L = 5.7km	L = 5.7km
최소곡선반경		R = 550m	R = 350m
최대종단선형		S = 5.0%	S = 5.5%
개략공사비		6,850억원	8,020억원
장 · 단 점	기술적측면	• 시간적·환경적 제약없이 시공 가능 • 공사중 기존 동부간선도로 통행처리 우수 • 추가 차수시설 불필요 • 기존도로 접속 연결로길이 증가 ➔ 본선과 접속도로 종단 단차 최대 • 대심도 통과로 방재측면에서 다소 불리	• 고수부지 공사로 우기시 공사제한 발생 • 공사중 기존 동부간선도로 통행처리 다소 불리 • 조립식 가시설 및 차수시설 필요 • 기존도로 접속 연결로 길이 축소 ➔ 본선과 접속도로 종단 단차 최소 • 저심도 통과로 인한 방재측면에서 유리
	사회적측면	• 대심도(지하50m) 통과로 민원 해소	• 공사중 중랑천변 체육공원 이용자 제약 등 민원 예상
	경제적측면	• 대심도 터널 계획으로 공사비 보통 • 지하매설물 저축배제 ➔ 보상비 없음	• 가시설 계획으로 공사비 고가 • 지하매설물 저축과다 ➔ 보상비 고가
	환경적측면	• 중랑천 저축 배제로 환경오염 측면 우수	• 중랑천 수변공원 개착 시공으로 수질 등 환경오염 우려
선정		○	
검토결과		• 비교 2안은 연결로 길이 축소로 방재측면에서는 유리하나 공사비가 고가이며, 우기시 등 공사제한 발생 및 공사중 민원과 수질 등 환경오염이 예상됨 • 따라서 연결로 길이 증가로 방재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하나 공사비가 보통이며, 중랑천 저축 배제로 환경오염 측면이 우수하고, 예상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는 비교 1안이 타당함	

1.5 입지의 타당성

1.5.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구 분	본문요약
현황	■ 육상식물상(문헌 및 자료조사) ○ 식물상 : 61과 172종 1아종 15변종 2품종, 총 190종류 ○ 멸종위기야생식물 특정식물군락 등은 분포하지 않음 ○ 환경부지정 특정식물종(식재) : 왕벚나무(V등급), 측백나무(IV등급), 향나무(III등급), 이팝나무(II등급), 잣나무(I등급) 등 관찰 ○ 생태계교란 생물 :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가시상추 등 4종류 ○ 생태·자연도 : 3등급(토공사지역) ■ 육상동물상(문헌 및 자료조사) ○ 포유류 : 고양이(야생화) 1종 ○ 양서·파충류 : 발견 안됨 ○ 조류 : 8종 117개체 ■ 육수동물상(문헌조사) ○ 담수어류 : 4종 54개체 ○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17종 320개체 ■ 법정보호종 : 황조롱이(천323-8호)
영향예측	■ 육상식물상 ○ 계획수립에 따라 중랑천 구간 RAMP 구간에 한해 토공사 진행 ○ 토공사 구간에서는 식물상 및 식생의 변화가 발생 예측되나, 시가지 구간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상들로 자연성이 낮아 영향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 계획수립에 따라 중랑천 구간 RAMP 구간에 한해 토공사 진행 ○ RAMP 구간과 환기소 예정지를 중심으로 조경수 훼손 ■ 육상동물상 ○ 공사로 인한 동물상 영향 미미 ○ 공사시 조류종의 일시적 회피 및 이동 예상 ○ 동물 이동로 단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법정보호종 ○ 황조롱이(천323-8호) 공사구간 회피 및 이동 ■ 육수동물상 ○ 공사로 인한 일시적 서식지 교란
저감방안	■ 육상식물상 ○ 일부 발생되는 절·성토 비탈면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녹화공법을 선정 ○ 주변 경관을 고려한 차폐식재, 경계식재 ■ 육상동물상 ○ 작업량을 조절 등 소음·진동 영향 최소화 ■ 육수동물상 ○ 하천 유수부 공사는 지양, 공사구간 하단 침사지 설치 ○ 중랑천 육수동물상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나. 지형 및 생태측 보전

구 분	본문요약
현황	■ 지형현황 ○ 해발 500m이하의 구릉성 산지 및 평지가 넓게 분포하고, 중랑천이 남북으로 흐름 ○ 계획노선의 시점부와 종점부는 약 100m이하의 고도이며, 인근지역 최대 해발고도는 약 300m로 계획노선 동쪽 중앙에 위치한 용마산에 해당함 ■ 지질현황 ○ 계획노선은 호상편마암과 화강암류가 기반암으로 분포 ■ 지반조사 ○ 계획노선 지층은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기반암으로 구성 ■ 보전가치(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가 있는 지형·지질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영향예측	■ 지형변화 ○ 계획노선 시·종점 구간, 지하차도 출입시설(IC), 환기소 구간이 토공사가 이뤄져 지형변화가 발생되나, 노선이 지하화로 현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지형변화는 미미함 ■ 토사유출 ○ 시·종점 구간, 출입시설(IC), 환기소 구간에서 토공사로 인해 강우시 토사유출이 예상됨 ■ 연약지반 ○ 노선 시·종점 구간, 출입시설(IC) 구간, 환기소 구간 상부 토피에서 매립층 및 퇴적층이 일부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나 노선이 지하화로 계획되어 연약지반 분포는 국한적임 ■ 지하차도 안정성검토 ○ 터널 상부 지하철 구조물 안정성 검토결과 허용치 이내로 안정성이 확보됨 ○ 지하차도 기초 안정성 검토, 기반암지지 직접기초 지지력 검토, 직접기초 침하량 검토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판정됨
저감방안	■ 지형변화 최소화 대책 ○ 적법절차에 의거한 토공계획 수립, 지형변화 최소화를 위한 비탈면 안정화 계획 등 수립 ■ 토공처리계획 ○ 단계별 공사계획 수립과 현장 인접지역 임시적치장 활용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공계획을 수립함(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을 연계 처리) ■ 토사유출 방지대책 ○ 토공구간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유출토사를 침전시킨 후 인근 하천으로 방류 ■ 진출입로(IC) 구간 비탈면의 안정화 대책 ○ 불력식 보강토 옹벽, RC 옹벽 적용 ■ 터널 및 지하차도 안정성 확보방안 ○ 터널 굴착시 안정성 확보 : 차수그라우팅, 휘폴링, 일반천공형 그라우팅, 직천공형 그라우팅 공법 ○ 지하차도 구간 : Sheet Pile + H-Pile(하천 인접 및 연암 지지 구간), H-Pile+토류판(도심지 구간), CIP공법(구조물에 인접 구간) ■ 터널 굴착공법 : NATM 공법(무진동 발파) 적용

다.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본문요약
현황	■ 계획노선 경관현황 ○ 인공경관 : 도로, 주거지역(아파트 및 단독주택), 상업지역 등 인공경관, 시점부 주변 영동대교 및 지하철 2호선, 중점부 인근 북부간선도로 교량이 분며, 고층빌딩 밀집 ○ 수 경관 : 한강이 동에서 서로 유하하고 있으며, 중점부~중점부에는 중랑천이 북에서 남으로 유하 ○ 산림·녹지 경관 : 계획노선 내 산림경관은 분포하지 않음, 녹지경관으로 Ramp 구간 등에 분포하는 조경녹지 및 완충녹지가 일부 분포 ○ 역사·문화경관 : 계획노선 시점부에 봉은사 위치, 봉은사 내 다수의 문화재 분포 ■ 자연경관 심의대상 여부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경관변화 ○ 본 계획은 동부간선도로구간 및 기 시가지지역을 지하로 통과하는 10.4km 지하도로로써, 사업노선 내 주요 생태경관의 훼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수립에 따른 경관적 위압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로 변경 시에는 중랑천 복원 계획에 의해 인공경관이 감소하므로 긍정적인 경관 변화가 예상됨 ■ 조경식재 계획 ○ 환기소, 사무소 등이 예정된 지역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차폐식재나 경계식재 등을 통해 시설물을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라. 수환경의 보전

구 분	본문요약
현황	■ 하천 현황 ○ 계획노선 인근에 한강, 중랑천 위치 ■ 수질 현황 ○ 지표수질(8개항목) - DO 8.7~11.8mg/L(Ia등급(7.5mg/L이상)) - BOD 1.0~5.9mg/L(Ia등급(1.0mg/L이하)~IV등급(8.0mg/L이하)) - COD 4.3~6.3mg/L(II 등급(5.0mg/L이하)~III등급(7.0mg/L이하)) - SS 7.1~8.9mg/L(Ia등급(25.0mg/L이하)) - T-P 0.033~0.170mg/L(Ia등급(0.02mg/L이하)~III등급(0.2mg/L이하)) - TOC 2.0~4.2mg/L(Ia등급(2.0mg/L이하)~III등급(5.0mg/L이하)) ○ 지하수질(17개항목) - pH : 6.7 - NO₃-N : 87mg/L - 지하수위 : 16.7m - Cl- : 68.6mg/L(250 이하) - 대장균수 : 5(군수/100mL) (5,000 이하) - 그 외 항목은 불검출됨 ■ 수질관련 지구지정 현황(서울특별시 강남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성동구) ○ 폐수배출 허용기준 적용지역 : “나” 지역 ○ 취수장 : 1개소(성동구), 정수장 : 2개소(광진구, 성동구) ○ 환경기초시설 현황 ○ 하수처리시설 : 2개소(강남구, 중랑구) ○ 분뇨처리시설 : 1개소(중랑구) ■ 수질오염총량 현황 ○ 한강 H 지역

구 분	본문요약
영향예측	■ 공사시 ○ 토공사에 따른 토사유출량 : 1.38ton/일 ○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발생량 : 4,750m³/일 ○ 터널공사에 따른 지하수 영향 - 공사시 청담동 이용관정에서 최대 2.2m의 수위저하가 예상되나 공사완료 후 점진적으로 지하수위가 회복하는 것으로 예측 ○ 현장인부에 의한 오수발생량 : 14.3m³/일 ■ 운영시 ○ 유지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오수발생량 : 29.15m³/일 ○ 수질오염총량 검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이전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와 협의를 득할 계획임
저감방안	■ 공사시 ○ 토사유출 - 부지정지 작업은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실시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부직포나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 방지 - 공사구간 인근 하천 하류부에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 터널공사에 의한 영향 - 터널폐수처리시설 설치 ○ 현장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 이동화장실 설치시 발생분뇨는 전량 위탁처리 - 현장사무소 설치시 발생 오수는 공공하수관거 유입 처리 ■ 운영시 ○ 유지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오수처리계획 - 기존 차집관거에 연결하여 관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 비점오염저감대책 - 도로구역 및 유지관리사무소 내 비점오염처리시설(13개소) 설치

1.5.2 생활환경의 안전성

가. 대기질

구 분	본문요약
현황	■ 문헌조사1 : 5지점(2015년 6월 8일~9일) ○ PM-10 35~39$\mu\text{g}/\text{m}^3$, SO₂ 0.004~0.006ppm, NO₂ 0.024~0.052ppm, CO 0.4~0.6ppm, O₃ 0.021~0.031ppm 으로 조사되어 전 지점에서 국가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문헌조사2 : 3지점(강남대로, 광진구, 성북구)(2017년 4월~2018년 3월) ○ PM-2.5 10~34$\mu\text{g}/\text{m}^3$, PM-10 20~58$\mu\text{g}/\text{m}^3$, NO₂ 0.021~0.039ppm, SO₂ 0.003~0.006ppm, CO 0.3~0.7ppm, O₃ 0.008~0.043ppm 으로 조사되어 전 지점에서 국가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구 분	본문요약																																												
영향예측	■ 공사시 ◦ 투입장비 운용 및 토공(절·성토)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오염물질 배출량(g/s)</th></tr><tr><th>PM-10</th><th>PM-2.5</th><th>NO2</th></tr><tr><td>건설장비의 투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Q1)</td><td>0.02013</td><td>0.01892</td><td>0.49370</td></tr><tr><td>비포장 도로에서 덤프트럭 이동에 의한 발생량(Q2)</td><td>1.41828</td><td>0.14183</td><td>—</td></tr><tr><td>아적장 주위에서의 기타장비 운행에 의한 발생량(Q3)</td><td>0.10511</td><td>0.01051</td><td>—</td></tr><tr><td>토공물량 상적 및 하적에 따른 발생량(Q4)</td><td>0.00010</td><td>0.00001</td><td>—</td></tr><tr><td>합 계</td><td>1.54362</td><td>0.17127</td><td>0.49370</td></tr></table> ■ 운영시 ◦ 장래교통량(2026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환기소(2개소))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오염물질 배출량(g/s)</th></tr><tr><th>PM-10</th><th>PM-2.5</th><th>NO2</th></tr><tr><td>환기소 #1</td><td>0.1598</td><td>0.0009</td><td>0.0008</td></tr><tr><td>환기소 #2</td><td>0.0569</td><td>0.0003</td><td>0.0003</td></tr></table>			구 분	오염물질 배출량(g/s)			PM-10	PM-2.5	NO2	건설장비의 투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Q1)	0.02013	0.01892	0.49370	비포장 도로에서 덤프트럭 이동에 의한 발생량(Q2)	1.41828	0.14183	—	아적장 주위에서의 기타장비 운행에 의한 발생량(Q3)	0.10511	0.01051	—	토공물량 상적 및 하적에 따른 발생량(Q4)	0.00010	0.00001	—	합 계	1.54362	0.17127	0.49370	구 분	오염물질 배출량(g/s)			PM-10	PM-2.5	NO2	환기소 #1	0.1598	0.0009	0.0008	환기소 #2	0.0569	0.0003	0.0003
	구 분	오염물질 배출량(g/s)																																											
		PM-10	PM-2.5	NO2																																									
	건설장비의 투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Q1)	0.02013	0.01892	0.49370																																									
	비포장 도로에서 덤프트럭 이동에 의한 발생량(Q2)	1.41828	0.14183	—																																									
	아적장 주위에서의 기타장비 운행에 의한 발생량(Q3)	0.10511	0.01051	—																																									
	토공물량 상적 및 하적에 따른 발생량(Q4)	0.00010	0.00001	—																																									
	합 계	1.54362	0.17127	0.49370																																									
	구 분	오염물질 배출량(g/s)																																											
		PM-10	PM-2.5	NO2																																									
환기소 #1	0.1598	0.0009	0.0008																																										
환기소 #2	0.0569	0.0003	0.0003																																										
저감방안	■ 공사시 ◦ 대기질 유지목표농도 설정(국가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기준 준수) ◦ 비산먼지 저감대책 : 주기적인 살수, 토사운반차량 관리·규제(속도제한 등),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대기환경보전법 참조), 터널공사시 환기대책 등 ◦ NOx 저감대책 : 노후장비 투입금지, 필요시 공사장비 투입대수 조정, 공회전 금지 ■ 운영시 ◦ 대기질 유지목표농도 설정, 환기설비계획,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공기정화시설) 설치 ◦ 유지관리사무소(환기소#1) 및 환기소#2 식재계획 수립 : 식재시 환경정화수종 고려																																												

나. 온실가스

구 분	본문요약
현황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1990년 292.9백만tonCO₂eq에서 2016년 694.1백만 tonCO₂eq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됨
영향예측	■ 공사시 투입장비가동 및 운영시 유발교통량에 따른 온실가스발생이 예상됨
저감방안	■ 공사시 ○ 투입장비 가동시 공회전 금지, 친환경(저탄소) 자재 사용 검토 ○ 효율적인 건설장비 투입 및 공사계획 수립 ■ 운영시 ○ 환경정화수종 식재,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검토 ○ 고효율에너지 이용설비 도입

다. 토 양

구 분	본문요약
현황	■ 문헌조사(환경부 토양측정망) ○ 전지점 전항목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1,2지역) 만족
영향예측	■ 건설장비 투입에 의한 영향 ○ 본 계획노선 내에 투입되는 건설장비의 가동, 수리 및 엔진오일 교체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이 무단으로 현장에 투기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토양에 영향 예상 ■ 공사시 작업인부에 의한 영향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토양오염이 우려됨 ■ 발파에 의한 토양오염 ○ 본 계획노선은 대부분 구간이 지하화로 계획되어 발파가 수반되며, 발파시 폭약의 사용 등으로 인해 중금속 및 화약잔류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이 우려됨
저감방안	■ 건설장비 투입시 토양오염 저감대책 ○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 유출 방지 - 공사장비의 수리 및 엔진오일 교체 등은 공사지역 인근 정비업소에서 처리 - 부득이하게 현장에서 처리하는 경우 폐유보관시설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보관 후 처리 ■ 작업인부 투입시 토양오염 저감대책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 설치, 분리수거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간이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정기적으로 분뇨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현장사무소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분뇨유출에 따른 오염 방지 ■ 발파시 토양오염대책 ○ 발파는 일반 무진동 발파 진행, 폭약은 친수성이 우수한 에멀전 적용 ○ 화약류 저장소 설치, 화약류 사용장소 점검부와 화약류 저장소 점검부 비치(철저 관리)

라. 소음·진동

구 분	본문요약																																
현황	■ 문헌조사 5지점(소음), 1지점(진동) ○ N-①,②,③,④,⑤, V-① 지점 중 소음 2지점(N-①, ⑤) 소음 기준 초과 - N-1 : 주간(69.0dB(A)), 야간(66.0dB(A)) / 주간기준(65dB(A)), 야간기준(55dB(A)) - N-5 : 주간(67.5dB(A)), 야간(61.0dB(A)) / 주간기준(70dB(A)), 야간기준(60dB(A))																																
영향예측	■ 공사시 ○ 투입장비 운용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오염도 산정 ○ 거리별 소음도 <table><tr><td>이격거리(m)</td><td>50</td><td>100</td><td>150</td><td>200</td><td>250</td><td>300</td></tr><tr><td>소음도(dB(A))</td><td>70.1</td><td>64.1</td><td>60.6</td><td>58.1</td><td>56.2</td><td>54.6</td></tr></table> ■ 운영시 ○ RAMP에서의 소음도	이격거리(m)	50	100	150	200	250	300	소음도(dB(A))	70.1	64.1	60.6	58.1	56.2	54.6																		
	이격거리(m)	50	100	150	200	250	300																										
	소음도(dB(A))	70.1	64.1	60.6	58.1	56.2	54.6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정온시설</th><th>소음도</th><th>초과여부</th></tr><tr><td rowspan="3">군자IC</td><td rowspan="3">RAMP A</td><td>송정동 주거지역</td><td>61.0</td><td></td></tr><tr><td>건영아파트</td><td>61.0</td><td></td></tr><tr><td>샬몬호텔</td><td>65.4</td><td>초과</td></tr><tr><td></td><td>RAMP B</td><td>레미안장안APT</td><td>61.0</td><td></td></tr><tr><td rowspan="3">월릉IC</td><td rowspan="3">RAMP C</td><td>석계초등학교</td><td>62.1</td><td>초과</td></tr><tr><td>목동아이파크APT</td><td>60.4</td><td></td></tr><tr><td>목현초등학교</td><td>62.1</td><td>초과</td></tr></table>	구분		정온시설	소음도	초과여부	군자IC	RAMP A	송정동 주거지역	61.0		건영아파트	61.0		샬몬호텔	65.4	초과		RAMP B	레미안장안APT	61.0		월릉IC	RAMP C	석계초등학교	62.1	초과	목동아이파크APT	60.4		목현초등학교	62.1	초과
구분		정온시설	소음도	초과여부																													
군자IC	RAMP A	송정동 주거지역	61.0																														
		건영아파트	61.0																														
		샬몬호텔	65.4	초과																													
	RAMP B	레미안장안APT	61.0																														
월릉IC	RAMP C	석계초등학교	62.1	초과																													
		목동아이파크APT	60.4																														
		목현초등학교	62.1	초과																													

구 분	본문요약
저감방안	■ 공사시 - 소음 저감방안 : 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반법규준수, 저소음 공법 및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음원대책 등 ■ 운영시 - 지하환기소(축류팬)에 소음저감시설을 설치 - 환기소 부근 소음자동측정망 설치

마.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구 분	본문요약
현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 130.71km²(100%) ○ 생활(가정생활+사업장생활) 폐기물 -발생량 : 총 2,464.1ton/일 -처리량 : 재활용 : 1,740.5ton/일(70.6%), 소각 : 477.3ton/일(19.4%), 매립 : 246.3ton/일(10.0%)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량 : 총 660.6ton/일 -처리량 : 재활용 : 464.3ton/일(70.3%), 소각 : 161.7ton/일(24.5%), 매립 : 34.6ton/일(5.2%) ○ 지정폐기물 -발생량 : 총 21,302.7ton/년(2016년 기준) -처리량 : 매립 12,376.6ton/년(58.1%), 재활용 6,367.9ton/년(29.9%), 소각 2,036.9ton/년(9.6%), 기타 521.3ton/년(2.4%) ○ 건설폐기물 -발생량 : 8,917.6ton/일 -처리량 : 재활용 8,381.2ton/일(94.0%), 매립 524.1ton/일(5.9%), 소각 12.3ton/일(0.1%) ■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 소각 및 매립시설 -서울특별시 : 소각시설 5개소 운영, 강남구 : 1개소 ■ 분뇨발생 및 처리시설 현황 ○ 분뇨발생량 : 3,079.6m³/일
영향예측	■ 공사시 ○ 공사인력 생활폐기물 발생 : 127.5kg/일 ○ 공사인력 분뇨 발생 : 158.3L/일 ○ 투입장비 폐유 발생 : 14.8L/일 ■ 운영시 ○ 근무인력 생활폐기물 발생 : 70.3kg/일 ○ 근무인력 분뇨 발생 : 90.5L/일
저감방안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분리배출 후 최대한 재활용, 해당 자치구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분뇨 : 간이화장실 설치, 전량 수거 후 정화조폐액 수거업체 위탁처리 ○ 폐유 : 폐유보관시설을 설치보관, 전문처리업체(지정폐기물)에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 현장 내 최대한 재활용,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재활용)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분리배출 후 최대한 재활용, 해당 자치구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구 분	본문요약
현황	■ 서울특별시의 환경기초시설 분포 현황 ○ 분뇨처리시설 3개소 (중랑, 난지, 서남) ○ 취수처리시설 4개소 (암사, 자양, 풍납, 강북) ○ 정수시설 6개소 (강북, 광암, 구의, 독도, 암사, 영등포) ○ 하수처리시설 4개소 (중랑, 난지, 탄천, 서남) ○ 소각시설 5개소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남구) ○ 기타시설(강남구 환경자원센터 1개소, 성북구 적환장 3개소)
영향예측	■ 공사시 건설폐기물 및 공사인력에 의한 생활폐기물, 오수 및 분뇨 발생이 예상됨
저감방안	■ 분뇨 및 오수처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계획지구 주변 기존 하수관로에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 건설폐기물 처리 ○ 공사장비의 정비, 세척 등은 가급적 외부의 지정된 정비업소 이용 ○ 공사지역 내 분리수거함 설치 및 재활용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1.5.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구 분	본문요약																							
현황	■ 계획지구 지목 현황 ○ 강남구 - 대지 40.5%, 전 22.0%, 도로 16.9% 등 ○ 광진구 - 대지 41.0%, 하천 14.8%, 도로 14.6% 등 ○ 동대문구 - 대지 54.9%, 도로 18.5%, 임야 5.2% 등 ○ 중랑구 - 대지 37.5% 임야 15.0% 도로 14.7% 등 ○ 성북구 - 대지 41.7%, 임야 33.4%, 도로 11.1% 등 ○ 성동구 - 대지 37.3%, 하천 22.4%, 도로 13.3% 등 ■ 계획지구 용도지역 현황 ○ 강남구 - 주거지역 89.1%, 상업지역 9.3%, 녹지지역 1.6% ○ 광진구 - 주거지역 95.5%, 상업지역 2.1%, 개발제한구역 : 2.4% ○ 동대문구 - 주거지역 93.5%, 상업지역 5.9%, 미지정 0.6% ○ 중랑구 - 주거지역 58.4%, 상업지역 1.9%, 녹지지역 39.7% ○ 성북구 - 주거지역 93.9%, 상업지역 25.8%, 개발제한구역 0.2%, 녹지지역 3.3% ○ 성동구 - 주거지역 77.1%, 상업지역 1.6%, 공업지역 21.0%, 녹지지역 0.3%																							
영향예측	■ 주요시설물 계획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사업물량</th></tr><tr><td rowspan="2">터널</td><td>본선</td><td>18.4km/2개소 (2차로)</td></tr><tr><td>IC</td><td>8.7km/4개소 (1차로)</td></tr><tr><td>BOX</td><td>IC</td><td>2.21km/4개소 (1차로)</td></tr><tr><td>U-TYPE</td><td>IC</td><td>1.49km/4개소 (1차로)</td></tr><tr><td colspan="2">출입시설</td><td>4개소</td></tr><tr><td colspan="2">영업소</td><td>2개소</td></tr><tr><td colspan="2">환 기 소</td><td>2개소</td></tr></table>	구 분		사업물량	터널	본선	18.4km/2개소 (2차로)	IC	8.7km/4개소 (1차로)	BOX	IC	2.21km/4개소 (1차로)	U-TYPE	IC	1.49km/4개소 (1차로)	출입시설		4개소	영업소		2개소	환 기 소		2개소
구 분		사업물량																						
터널	본선	18.4km/2개소 (2차로)																						
	IC	8.7km/4개소 (1차로)																						
BOX	IC	2.21km/4개소 (1차로)																						
U-TYPE	IC	1.49km/4개소 (1차로)																						
출입시설		4개소																						
영업소		2개소																						
환 기 소		2개소																						

구 분	본문요약
영향예측	■ 주변지역 교통개선 효과 : 성동~성수(동부간선도로)구간에서 56,128대 감소 ■ 진·출입시설(교차로) 계획 ○ 삼성 IC - 영동대로 진·출입 연결로 - 영동대로 및 장래개발계획(MICE) 이용교통량의 본 사업도로로 효과적인 진출·입을 위한 Up/Down 연결로 설치 ○ 청담 IC - 도산대로, 올림픽대로 진·출입 연결로 - 도산대로 이용교통량의 본 사업도로로 효과적인 진출·입을 위한 연결로 설치 ○ 군자 IC - 마들길, 천호대로 진·출입 연결로 - 기존 군자IC 연결로 지·정체 길이 및 엇갈림을 고려하여 기존 로터리형 연결로를 활용하여 접속 ○ 월릉 IC - 북부간선도로, 화랑로 진·출입 연결로 - 기존 월릉IC 로터리형 연결로를 활용하여 접속 및 기존 동부간선도로 접속시 교통영향 최소화
저감방안	■ 환경친화적 노선계획 검토 ■ 토지편입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보상

나. 인구 및 주거

구 분	본문요약
현황	■ 인구현황 ○ 지난 4년간('12~ '15) 인구는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2015년 인구수는 총 2,150,185인, 세대당 인구수는 2.4인/세대로 조사됨 ■ 주거현황 ○ 2014년 주거현황은 786,757가구, 주택보급률 98.8% ○ 최근 5년간('10~ '14) 주택보급률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됨 ○ 2014년 현재 주택비율 현황은 아파트,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순으로 조사됨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공사시 ○ 지하에 소형차전용 고속도로 및 지상에 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구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운영시 ○ 동부간선도로 지상부의 교통량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상에는 녹지대 조성을 통한 주민 접근성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옹벽 및 방음벽으로 인한 지역 단절 등 동부간선도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소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됨

1.6 결 론

- 본 계획은 강북에서 강남, 수도권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 및 혼잡한 기존 도시고속도로의 수요 분산을 위해 “삼성~월릉” 구간을 연결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으로, 계획수립에 따른 운행비용·통행시간·교통사고비용·환경비용 절감, 강북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경쟁력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 본 계획수립에 있어 설정된 대안의 종류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의견수렴결과 “한강통과구간”은 연장 최소 및 고층건물(엘루이 호텔 등) 하부통과 배제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공사비가 보통인 비교1안, “중랑천 통과구간”은 중랑천 저층 배제로 환경오염 측면이 우수하고, 예상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는 비교 1안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동부간선 지하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장 위치	강남구 청담동(삼성IC)~ 성북구 석관동(월릉IC)		
사업자	(가칭) 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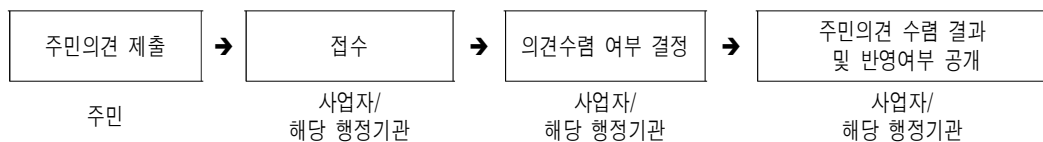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 제출합니다.

Имя	Фамилия	Год
Иван	Иванов	1990
Петр	Петров	1995
Алексей	Алексеев	2000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9-1호

2019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수시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2월 7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재 산 등 록 사 항 공 개 목 록

소속		서울산업진흥원		직위	대표이사	성명	정영승
본인 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토지(소재)					1,138,681		
부	임야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758-1번지 1,121.00㎡ 중 373.67㎡		1,266	소유권이전		
부	전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대두서리 1009번지 1,666.00㎡		19,992	소유권이전		
부	답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대두서리 1010번지 377.00㎡		4,524	소유권이전		
부	전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대두서리 179번지 790.00㎡ 중 395.00㎡		2,496	소유권이전		
부	전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대두서리 309번지 169.00㎡ 중 84.50㎡		423	소유권이전		
부	전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대두서리 325번지 889.00㎡ 중 444.50㎡		2,226	소유권이전		
부	전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143-2번지 3.00㎡		45	소유권이전		
부	답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144번지 1,599.00㎡		71,155	소유권이전		
부	답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145번지 1,557.00㎡		69,286	소유권이전		
부	대지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155-15번지 53.00㎡		975	소유권이전		

부	전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155-4번지 3,514.00㎡	215,056	소유권이전
부	답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156-5번지 465.00㎡	29,341	소유권이전
부	답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158-11번지 881.00㎡	55,591	소유권이전
부	답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158-14번지 17.00㎡	780	소유권이전
부	전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158-2번지 991.00㎡	35,279	소유권이전
부	답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159-1번지 5,078.00㎡	225,971	소유권이전
부	답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159-2번지 60.00㎡	2,376	소유권이전
부	답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159-3번지 13.00㎡	479	소유권이전
부	전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160번지 116.00㎡	3,897	소유권이전
부	전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241-1번지 2,912.00㎡	18,403	소유권이전
부	전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262-3번지 576.00㎡	27,590	소유권이전
부	전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269번지 6,866.00㎡	113,289	소유권이전
부	전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739번지 1,779.00㎡	8,521	소유권이전
부	답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793번지 1,418.00㎡	6,792	소유권이전
부	전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864번지 2,615.00㎡	27,457	소유권이전
부	임야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산 64번지 34,116.00㎡	37,186	소유권이전
부	임야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산 67번지 10,711.00㎡	13,495	소유권이전
모	전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260번지 2,647.00㎡	144,790	소유권이전
▶ 건물(소계)			1,400,100	
부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대지 461.80㎡ 건물 210.92㎡	1,330,000	소유권이전
장남	단독주택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대지 579.00㎡ 건물 149.00㎡	41,600	소유권이전
장남	단독주택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대지 1,002.00㎡ 건물 62.03㎡	28,500	소유권이전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900	
본인	자동차	2001년식 사브 배기량(1,998cc)	4,900	

▶ 예금(소계)		458,617	
본인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373, 신한은행 1,012, KB증권 6, 한화손해보험 449, 씨티은행 1,076, 농협중앙회 86, (주)KEB하나은행 8, 한국카카오은행(주) 1,156	4,166	예금가입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204, 교보증권 31, 국민은행 9,135, 흥국화재해상보험(주) 4,823,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4,878, 중소기업은행 201, 동양생명보험 170, 삼성생명보험 3,852, (주)KB손해보험 2,776, 씨티은행 1, 하이투자증권 438, 롯데손해보험 3,696, AIA생명보험주식회사 1,886, 신한생명보험 550, 한국투자증권 20,119, MG손해보험(주) 2,343	55,103	예금가입
부	미래에셋대우(주) 56,864, NH투자증권 2, 한국투자증권 171,131, 농협중앙회 22,513, 삼성증권 27,994, 우리은행 32,008	310,512	예금가입
모	국민은행 243, 한국투자증권 53,634, 신한은행 4, 우리은행 4,509	58,390	예금가입
장남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136, 한국투자증권 21,967, 국민은행 52, (주)KEB하나은행 3,939, (주)KB손해보험 1,095	27,189	예금가입
장녀	(주)KEB하나은행 11,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113, 우리은행 2,150, (주)KB손해보험 983	3,257	예금가입
▶ 유가증권(소계)		166,410	
부	비상장 주식 나눔기술 3,742주	1,871	주식취득
장남	비상장 주식 렛츠 329,079주	164,539	주식취득
▶ 채무(소계)		12,330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국민은행 4,700, 흥국화재해상보험(주) 1,830, 삼성생명보험 2,800	9,330	금융기관 차입
장남	금융기관채무 (주)KEB하나은행 3,000	3,000	금융기관 차입
총 계		3,156,378	

재 산 등 록 사 항 공 개 목 록

소속	(재)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직위	대표이사	성명	김영대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 토지(소계)						
	배우자	임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산 37번지 10,612.00㎡			910,602	
	배우자	임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산 36번지 699,305.00㎡			12,946	
	배우자	임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산 36번지 2호 산 36-2번지 33,058.00㎡			804,200	
	배우자	전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81번지 565.00㎡			0	
	배우자	전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82번지 2,043.00㎡			11,865	
	배우자	전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83번지 555.00㎡			42,903	
	배우자	전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둔전리 105번지 1,319.00㎡			11,655	
	배우자	전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둔전리 106번지 5,144.00㎡			2,651	
배우자	임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산 36번지 1호 33,058.00㎡			12,191		
배우자	전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둔전리 106번지 5,144.00㎡			0		
▶ 건물(소계)					12,191		
배우자	아파트 전세(임차)권	경기도 일산 서구 일현로70 탄현동 탄현마을, 104동 1704호 건물 144.70㎡			559,000		
장남	다세대주택 전세(임차)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 29번길 17, 103동 102호(연남동, 건물 52.89㎡			280,000		
차남	연립주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동 107번지 2호 101동 1호 건물 39,924.00㎡ 중 99.81㎡			130,000		
					149,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본인	자동차	2007년식 오피러스 배기량(2,700cc)		55,666
				34,950
차남	자동차	2007년식 소나타 배기량(1,998cc)		20,716 (17,000)
▶ 예금(소계)				226,995
본인		신한은행 1,424, 중소기업은행 543, 우り은행 100, NH투자증권 1, 농협은행 5, 국민은행 4, (주)KEB하나은행 11, 삼성화재해상보험 450		2,538
배우자		DB손해보험(주) 30,857, 기평군산림조합 407, 국민은행 246,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3,419, 농협중앙회 6, 신한은행 320, 중소기업은행 20,176, 골든브릿지투자증권 26, 삼성생명보험 20,985, NH투자증권 1, 농협은행 39,672,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40,508,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25,544, 교보생명보험 4,162		186,329
차녀		국민은행 1,130		1,130
장남		신한은행 8,640,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8,368, 삼성생명보험 9,234, 국민은행 8,120, 우り은행 316		34,678
차남		국민은행 724, (주)KEB하나은행 30		754
장녀		중소기업은행 1, 중국은행 3, 신한은행 1,562		1,566
▶ 유가증권(소계)				44,329
배우자	상장주식	아스타 1,100주, 대아티아이 2,300주		28,079
배우자	비상장주식	(주)안양제일자동차공업사 3,000주		15,000
차녀	비상장주식	(주)안양제일자동차공업사 100주		500
장녀	비상장주식	(주)안양제일자동차공업사 150주		750
▶ 채무(소계)				297,151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25,000, 롯데카드 16,319		41,319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중소기업은행 220,000		220,000
장남	금융기관채무	우り은행 20,000		20,000
차남	금융기관채무	현대캐피탈 2,000,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3,832		15,832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본인	출연	사단법인 한국노동복지센터, 출연재산: 5,000천원, 보유직위: 이사		-
총 계				1,499,441

재 산 등 록 사 항 공 개 목 록

소속	(제)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직위	(전)대표이사	성명	이경희 (단위 : 천원)
본인과 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본인	도로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115-3번지 332.00㎡	956,642	0	0	956,642
본인	대지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103번지 660.00㎡ 중 330.00㎡	18,060	0	0	18,060
본인	전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103-1번지 2,256.00㎡ 중 1,128.00㎡	9,042	0	0	9,042
본인	임야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369번지 1,041.00㎡	11,505	0	0	11,505
본인	임야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산 48번지 47,702.00㎡	321	0	0	321
본인	임야	경기도 부천시 목길동 산 62-3번지 1,983.00㎡ 중 991.50㎡	14,167	0	0	14,167
본인	대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135번지 301.00㎡ 중 150.50㎡	41,643	0	0	41,643
본인	대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136-1번지 3,412.00㎡ 중 1,706.00㎡	57,641	0	0	57,641
본인	대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136-8번지 67.00㎡ 중 33.50㎡	656,980	0	0	656,980
본인	대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137번지 750.00㎡ 중 375.00㎡	3,658	0	0	3,658
본인	대지		143,625	0	0	143,625
▶ 건물(소계)						
본인	단독주택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건물 164.46㎡ 중 82.23㎡	1,259,650	59,286	0	1,318,936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구 한강로3가 65-230 한강대우트럼프월드 3 건물 159.78㎡ 중 79.89㎡	44,500	0	0	44,500
본인	복합건물 (주택+상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동 대지 49.60㎡ 중 33.07㎡ 건물 127.87㎡ 중 85.25㎡	464,000	0	0	464,000
본인	사무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건물 307.90㎡ 중 153.95㎡ (건물 총면적 307.90㎡ 증가, 지면면적 153.95㎡ 증가)	287,150	0	0	287,150
본인			-	59,286 (59,286)	0	59,286
						상속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구 한강로3가 65-230 한강대우트림프월드3 건물 159.78㎡ 중 79.89㎡	464,000	0	0	464,000	가액변동 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본인	자동차	2016년식 도요타 프리우스 E 배기량(1,798cc)	32,700	0	0	32,700	가액변동 없음
▶ 예금(소계)							
본인		우리은행 125,266(257,190 감소), 흥국생명보험 15,192, 우체국 125, 국민은행 36,141(18,501 증가), (주)KEB하나은행 0(952 감소),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22,640	439,005	19,667	259,308	199,364	상속세 납부
배우자		국민은행 621, 우리은행 20,519(9,723 증가), 농협은행 64,264(1,234 감소), 농협생명보험 30,000	106,915	9,723	1,234	115,404	
▶ 채무(소계)							
본인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210,000	210,000	0	0	210,000	가액변동 없음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동 임대보증금	35,000	0	0	35,000	가액변동 없음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총 계			2,549,912	88,676	260,542	2,378,046	증감액 : -171,866천원

구 고 시

◆ 은평구고시 제2019-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10호(2018.12.13.)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진관동 161-11일원(사회복지시설④)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건축허가 포함)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되, 『같은법』 제91조,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고시사항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2월 7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61-11 일원 (사회복지시설④)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2) 명 칭 : 구립 진관어린이집 신축공사

다.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 : 2019년 1월 7일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대지의 면적	시설계획				비고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수 (지하/지상)	용도	
신축	330.9㎡	182.28㎡ (55.09%)	427.67㎡ (129.24%)	0/3	사회복지시설 구립어린이집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은평구청
- 2)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9.09.14.까지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아. 건축계획변경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의제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타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건축과(02-351-7545)에 비치

□ 위치도



□ 조감도



◆ 관악구고시 제2019-1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시 고시」 제289호(1978.04.19)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2008-289호(2008.8.2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도덕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9-12호(2019.01.04.)로 열람 공고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관련부서 및 이해당사자 등의 별도 의견이 없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변경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저촉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 수령자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879-650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2월 7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신림동 246-34, 246-54, 818-4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도덕소공원 조성사업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건물보상, 영업권 보상, 공원조성 등

다. 규 모 : 394m² (공원 전체면적)

라.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0.12.31.

바. 고시방법 : 서울시보 게재

사. 고시도면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03)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조서 : 붙임참조

☐ 토지 조서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성명	공유지분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내용	
신림동 246-34	대지	102	102	김영표	3분의1	관악구 신림동 246-34				
				김영선	3분의1	관악구 신림동 1535-11				
				김정선	3분의1	관악구 호암로 24가길 6, 301호 (신림동, 한울빌라)				
신림동 246-54	대지	7	7	김영표	3분의1	관악구 신림동 246-34				
				서순임	3분의1	관악구 신림동 246-34				
				김영선	3분의1	관악구 신림동 1535-11				
신림동 818-42	구거	387	117	국유지 (국토교통부)						

☐ 건축물 조서

소재지	주용도	규격 및 구조	연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공유지분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내용	
신림동 246-34 외 1필지	제2종근린생활 시설 외 1	철근콘크리트조/ 연외조 (지하1층/지상3층)	256.12	김영표	3분의1	관악구 신림동 246-34				
				서순임	3분의1	관악구 신림동 246-34				
				김영선	3분의1	관악구 신림동 1535-11				

구공고

◆ 용산구공고 제2019-1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건교부 고시 제1963-560(1963.09.19)호로 결정 고시된 『이태원동150~159-3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 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합니다.
3.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2월 7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150 ~ 159-3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의 명칭 : 이태원동150 ~ 159-3간 도로개설공사

라.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폭 4m, 연장 176m

마.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바.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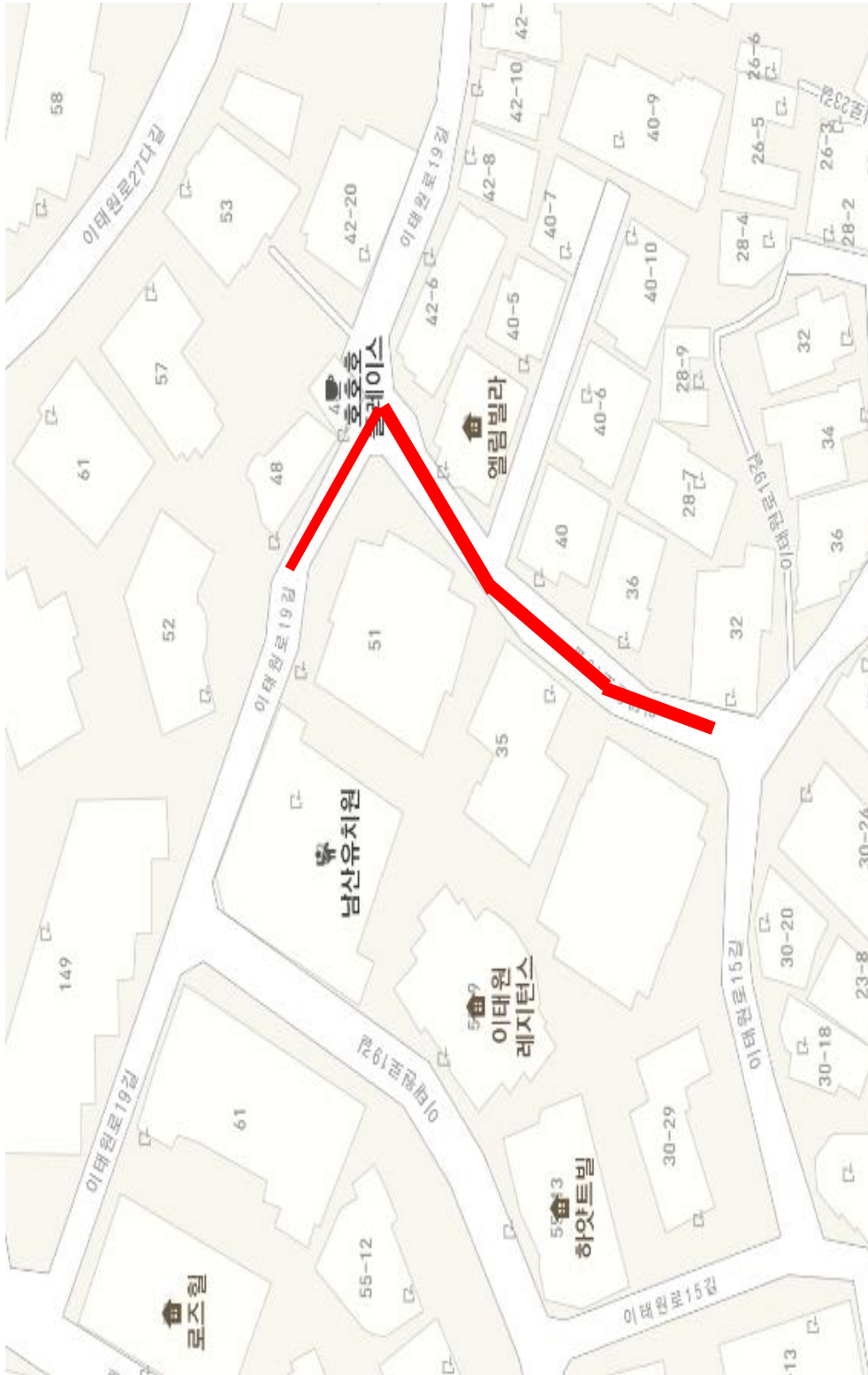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 단, 토지 및 물건내역은 추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시 변동될 수 있음.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자. 관계서류는 용산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하오니, 열람 내용에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장
 ■ 사업명칭 : 이태원동150 ~ 159-3간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	이태원동 151-1	대	575	6	장운선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19길 52				
2	이태원동 151-18	대	10	10	장운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54-5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압류 (건설관리과)	
3	이태원동 150-2	대	36	36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4	이태원동 151-6	대	173	1	위안균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19길 48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근저당권자	
5	이태원동 155-8	도	31	31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6	이태원동 122-19	도	10	10	김원식	서울시 용산구 길월동 1-2				
					김덕기	서울시 용산구 길월동 6-5				
7	이태원동 122-20	도	23	23	국 (건설부)					
8	이태원동 151-15	도	1	1	이맹희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01-1				
9	이태원동 159-4	도	26	26	중앙개발 (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50				
					삼성물산 (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50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제일모직 공업(주)	대구시 북구 칠산동 105				
					제일제당 공업(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50				
10	이태원동 120-16	대	2	2	박희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19길 28-7				
11	이태원동 159-5	도	17	17	중앙개발 (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50				
					삼성물산 (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50				
					제일모직 공업(주)	대구시 북구 칠산동 105				
					제일제당 공업(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50				
12	이태원동 150-7	도	79	79	서울시					
13	이태원동 120-12	도	30	30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I				
14	이태원동 151-21	도	798	140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I				
15	이태원동 159-11	도	1121	136	국 (기획 재정부)					

◆ 광진구공고 제2019-91호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소공원2,3) 조성계획(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4호(2018.11.29.)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소공원2,3)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7일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위치 및 면적

연 번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1	문화공원	자양동 680-63 일대	3,234
2	소공원	자양동 781-3 일대	256
3	소공원	자양동 680-83 일대	605

3. 조성계획(안) : 열람장소에 비치
4.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450-7775)
7.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내 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1. 총괄표 (위치 :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3,234.00	1,294.79		27.06	147.30	21	증)3,234.00㎡
기 반 시 설	소 계	1,044.57					증)1,044.57㎡
	도 로	593.30					증)593.30㎡
	광 장	451.27					증)451.27㎡
조 경 시 설	2.78	2.78				3	증)2.78㎡
휴 양 시 설	154.06	154.06				11	증)154.06㎡
운 동 시 설	27.00	27.00				4	증)27.00㎡
편 익 시 설	32.96	32.96		16.56	136.80	1	증)32.96㎡
관 리 시 설	33.42	33.42		10.50	10.50	2	증)33.42㎡
녹지 및 기타	1,939.21						증)1,939.21㎡
공원 건폐율 (법정 20%)	27.06㎡ / 3,234.00㎡ x 100% = 0.84%						

2. 시설조서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3,234.00	1,294.79	2		27.06	147.30	21	
기 반 시 설	소 계		1,044.57	1,044.57						
	도 로	자양동 680-63 일대	593.30	593.30						
	광 장	가	451.27	451.27						
	(진입광장)	가-1	(174.00)	(174.00)						
	(테마광장)	가-2	(277.27)	(277.27)						
조경 시설	소 계		2.78	2.78					3	
	가벽	① 자양동 680-63 일대	2.78	2.78					3	
휴양 시설	소 계		154.06	154.06					11	
	조형앉음벽	② 자양동 680-63 일대	37.46	37.46					5	
	스탠드	③	49.10	49.10					3	
	파고라	④	67.50	67.50					3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 시설	소 계		27.00	27.00					4	
	체력단련장 나	자양동 680-63 일대	27.00	27.00						
	체력단련시설 ⑤	"							4	
편익 시설	소 계		32.96	32.96		1	16.56	136.80	1	
	자전거주차장 1	자양동 680-63 일대	16.56	16.56		1	16.56	136.80		
	공공자전거 ⑥	"	16.40	16.40					1	
관리 시설	소 계		33.42	22.92		1	10.50	10.50	2	
	보관실 ⑦	자양동 680-63 일대	10.50			1	10.50	10.50		
	구의동보루안내 판 ⑧	"	21.60	21.60					1	
	종합안내판 ⑨	"	1.32	1.32					1	
녹지 및 기타	소 계	자양동 680-63 일대	1,939.21							
	녹지및기타	"	1,939.21							

3.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산책로	합 계			325.2	593.30				
		소 계			325.2	593.30				
		- 산-1	2.0~3.0	58.88	103.88	산책로	진입광장	산책로2		
		- 산-2	1.5~3.0	24.7	66.43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3		
		- 산-3	1.5~2.0	21.0	34.38	산책로	진입광장	산책로2		
		- 산-4	1.2	34.1	67.88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7		
		- 산-5	2.0~3.0	12.0	14.40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7		
		- 산-6	1.5~3.0	26.0	53.44	산책로	진입광장	산책로12		
		- 산-7	1.5~2.0	34.0	38.84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8		
		- 산-8	1.5	16.2	25.35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10		
		- 산-9	1.5	29.3	43.92	산책로	산책로8	산책로11		
		- 산-10	1.2~3.0	13.5	20.13	산책로	산책로8	산책로10		
		- 산-11	1.2~1.5	15.5	21.84	산책로	산책로10	테마광장		
		- 산-12	1.8~2.5	21.7	30.60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14		
		- 산-13	3.0	57.3	116.10	산책로	산책로12	테마광장		
		- 산-14	2.5~3.0	5.1	15.43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15		
		- 산-15	3.5~4.5	12.5	34.50	산책로	산책로14	자전거주차장		

조성계획도

자양동680-63 문화공원



시설조서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m2)	규모/수량	건축면적(m2)	비고
시설계						
기반시설			3,234.00		27.06	147.30
조경시설			1,294.79			
주요시설			1044.57			
체육시설			593.30			
문화시설			451.27			
관리시설			(174.00)			
녹지 및 기타			(277.27)			
기타			2.78			
소계			2.78	3개소		
체육시설			154.06			
주요시설			37.46	5개소		
체육시설			49.10	3개소		
문화시설			67.50	3개소		
관리시설			27.00			
문화시설			27.00	1개소		
소계			32.96			
관리시설			16.56		16.56	136.80
체육시설			16.40	1개소		
문화시설			33.42			
소계			10.50		10.50	10.50
관리시설			21.60	1개소		
문화시설			1.32	1개소		
소계			1,939.21			
녹지 및 기타			1,939.21			

**자양동 781-3번지 일대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내
소공원2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1. 총괄표 (위치 : 자양동 781-3번지 일대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256.00	50.14				1	
기 반 시 설	소 계	43.94					
	도 로	43.94					
조 경 시 설	3.84	3.84					
휴 양 시 설	2.36	2.36				1	
녹지 및 기타	205.86						
공원 시설을 (법정 20%)	50.14㎡ / 256.00㎡ x 100% = 19.60%						

2. 시설조서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위 치	256.00	50.14					1	
기 반 시 설	소 계		43.94	43.94						
	도 로		43.94	43.94						
조 경 시 설	소계	자양동 781-3 일대	3.84	3.84					12.7m	
	조형가벽	①	3.84	3.84						
휴 양 시 설	소 계	자양동 781-3 일대	2.36	2.36					1	
	앉음벽	②	1.42	1.42					4.8m	
	등벤치	③	0.94	0.94					1	
녹 지 및 기 타	소 계	"	205.86							
	녹지및기타	자양동 781-3 일대	205.86							

3. 도로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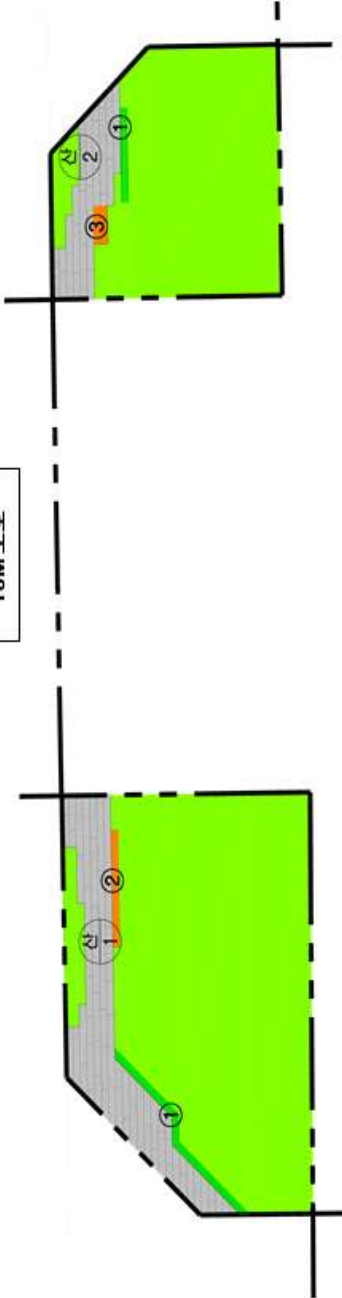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28.6	43.94				
소 계					28.6	43.94				
신설	산책로	-	산-1	1.5~ 3.0	19.2	30.76	산책로	입구부	산책로2	
		-	산-2	1.5~ 2.5	9.4	13.18	산책로	산책로1	소공원3	

조성 / 통선계 획도

소공원2



18M 도로



■ 시설 조서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m ²)	규모/수량	건축면적(m ²)	비 고
계						
시설 계						
기반시설		소 계	256.00			19.6%
		도로	50.14			
		소 계	43.94			
공공시설	①	조형가벽	3.84	12.7m		
		소 계	2.36			
휴양시설	②	안음벽	1.42	4.8m		
	③	등반치	0.94	1개소		
녹지 및 기타		소 계	205.86			
		녹지	205.86			80.4%

자양동 680-83번지 일대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내 소공원3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1. 총괄표 (위치 : 자양동 680-83번지 일대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605.00	120.29				10	
기 반 시 설	소 계	100.57					
	도 로	100.57					
휴 양 시 설	19.72	19.72				10	
녹지 및 기타	484.71						
공원 시설율 (법정 20%)	120.29㎡ / 605.00㎡ x 100% = 19.88%						

2. 시설조서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605.00	120.29					10	
기 반 시 설	소 계		100.57	100.57						
	도 로	자양동 680-83 일대	100.57	100.57						
휴 양 시 설	소 계		19.72	19.72					10	
	앉음벽	① 자양동 680-83 일대	6.40	6.40					21.4m	
	파고라	② "	11.52	11.52					2	
	등벤치	③ "	1.80	1.80					8	
녹지 및 기타	소 계	자양동 680-83 일대	484.71							
	녹지및기타	자양동 680-83 일대	484.71							

3. 도로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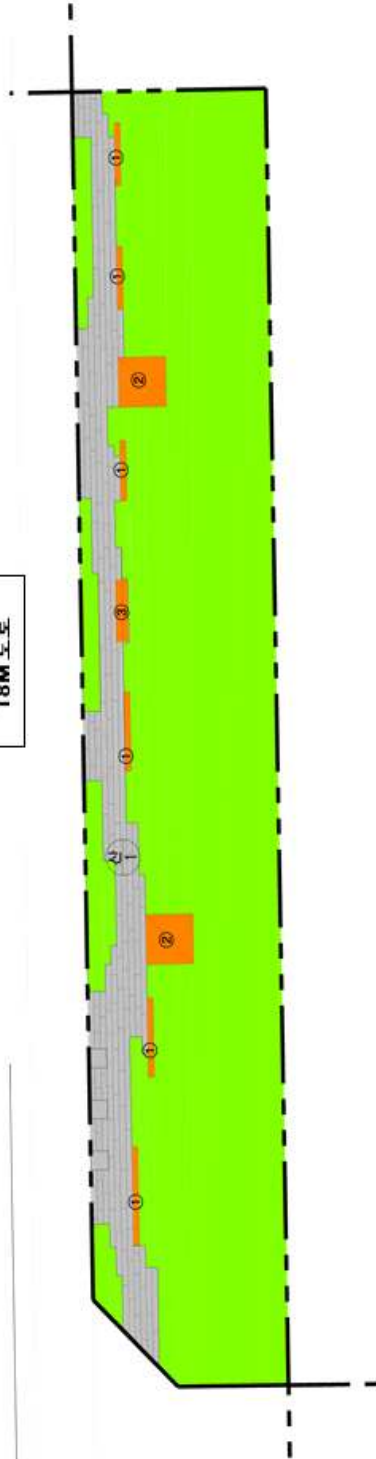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67.2	100.57				
신설	산책로	소 계			67.2	100.57				
		-	산-1	1.5~ 3.5	67.2	100.57	산책로	소공원2	-	

조성 / 통선 계획도

소공원3



18M 도로



■ 시설 조서

구 분	시설번호	시 설 명	시설면적 (m2)	규모/수량	건축면적(m2)	비고
기반시설	계		605.00			19.88%
	시설 계		120.29			
	도로		100.57			
	소 계		19.72			
휴양시설	①	안정벽	6.4	21.4m		
	②	파고라	11.52	2개소		
	③	등반지	1.8	8개소		
녹지 및 기타	소 계		484.71			
	녹지		484.71			

◆ 성북구공고 제2019-150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8-168호(2018.12.13.)로 결정(변경)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 공고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합니다.
3. 토지(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도시재생과(☎ 02-2241-2774)에 비치하고 공고일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7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조성사업

2)사업의 명칭 : 라인미술관 신축공사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85번지 일원

다. 공람공고내용

구분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사 업 내 역	건폐율	용적률	비고
내 용	2,957.0㎡	■ 건축규모 및 용도 ○ 문화시설 (1개동) · 지하3층, 지상2층, 연면적 5,835.93㎡	39.60%	75.23%	

라. 시 행 자

1) 주 소 :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남구 서오층석탑1길 7-1(서동) 111-85

2) 성 명 : 재단법인 라인문화재단 (오정화 이사장)

마.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21년 12월

바. 공람기간 : 2019.02.07. ~ 2019.02.21. (15일간)

사. 공람장소 : 성북구청 도시재생과

아. 관련도서 :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도면과 같음). 끝.

◆ 노원구공고 제2019-10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1974.5.11)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공고일(시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 내에 노원구청 토목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7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개요

사업위치	사업의 명칭	사업규모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비고
노원구 상계동581-191 ~ 359-3	상계동 581-191~359-3간 도로개설사업	B = 8.0m L = 93.0m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 (1974.5.11)	

다. 사업시행자

- 성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701-1)

라. 사업 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바. 공고 방법 : 시보 및 구청 홈페이지

사. 열람공고 기간 : 시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토목과(전화 2116-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사업의 명칭 : 상계동 581-191~359-3간 도로개설사업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성명	주 소	성명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소유권이외의 관리내용	
1	노원구 상계동 581-191	전	25	25	한필동	노원구 동일로 184길 39-7(공릉동, 5층)				
					한병옥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797번길 22 오남1차 청구아파트 105동 805호				
2	노원구 상계동 581-50	대	618	618	김중길	중랑구 묵동 20, 신내대림 아파트 513동 80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 노혜로 437	임류 (세무2과)	
3	노원구 상계동 359-3	도로	1,917.7	15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 노혜로 437				

물 건 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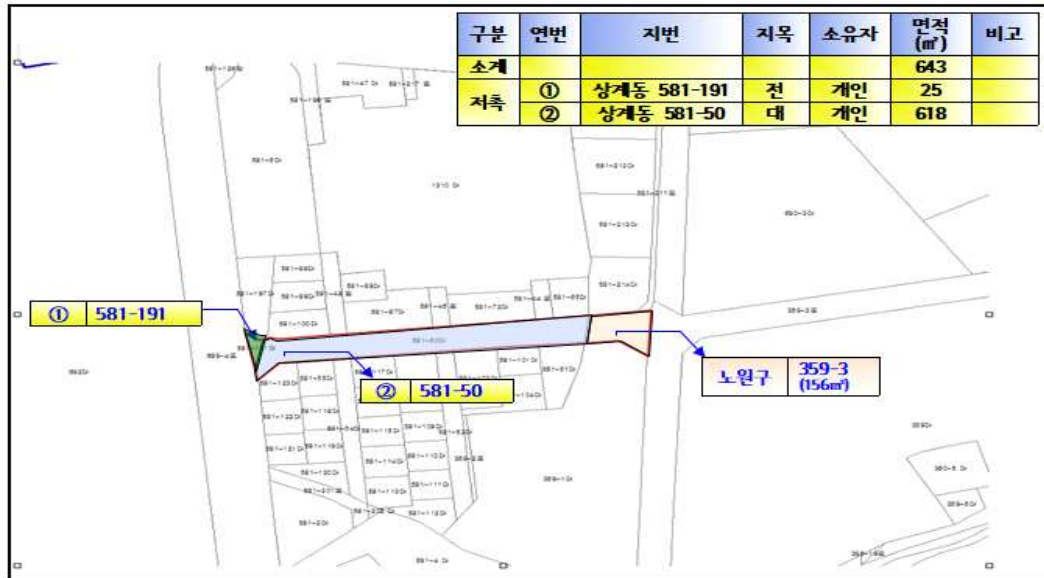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사업의 명칭 : 상계동 581-191~359-3간 도로개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주 소	성명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노원구 상계동 581-197 (휴대폰 할인매장)	데크	목재	2㎡		황희준	노원구 상계동 581-197				
2	노원구 상계동 581-123 (보람창과)	천막	철골조/ 천막	11㎡		권영환	노원구 상계동 581-123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 현황사진



◆ 영등포구공고 제2019-192호

영등포문화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

1. 서울시고시 제2016-18호(2016.01.14)로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로 지정된 영등포문화공원에 대하여
2. 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3. 본 공원조성계획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7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공 원 명 : 영등포문화공원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43-3일대

다. 면 적 : 5,464.5m²

라. 조성계획(안)

구 분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m2)	연면적 (m2)		
합 계	5,464.5	4,305.6				41	
기 반 시 설	소 계	350.2					
	도 로	255.5					
	광 장	94.7					
조 경 시 설						19	
휴 양 시 설	1,738.8	1,738.8					
유 희 시 설							
운 동 시 설							
교 양 시 설	2,216.6	2,216.6				7	
편 익 시 설							
관 리 시 설						15	
녹지 및 기타	1,158.9	1,158.9					

마.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바.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2670-3761)

영등포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1. 총 괄 표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43길 19 일대)

구 분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m2)	연면적 (m2)		
합 계	5,464.5	4,305.6				41	
기 반 시 설	소 계	350.2					
	도 로	255.5					
	광 장	94.7					
조 경 시 설						19	
휴 양 시 설	1,738.8	1,738.8					
유 희 시 설							
운 동 시 설							
교 양 시 설	2,216.6	2,216.6				7	
편 익 시 설							
관 리 시 설						15	
녹지 및 기타	1,158.9	1,158.9					
시 설 율 (법정 없음)	$(4,305.6\text{m}^2 / 5,464.5\text{m}^2) \times 100 = 78.8\%$						
건 폐 율 (법정 70%)							

2.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 (m2)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5,464.5	4,305.6					41
기 반 시 설	소 계			350.2	350.2					
	도 로		전지역	255.5	255.5					
	광장	가		94.7	94.7					
	진입광장 1	가-1	영중로14길 11-17	(31.1)	(31.1)					
	진입광장 2	가-2	영중로22길 10	(35.4)	(35.4)					
	진입광장 3	가-3	영등포로43길 23	(28.2)	(28.2)					
조 경 시 설	소 계									19
	파고라	①								2
	데크벤치	②								9
	데크긴의자	③								5
	원형데크의자	④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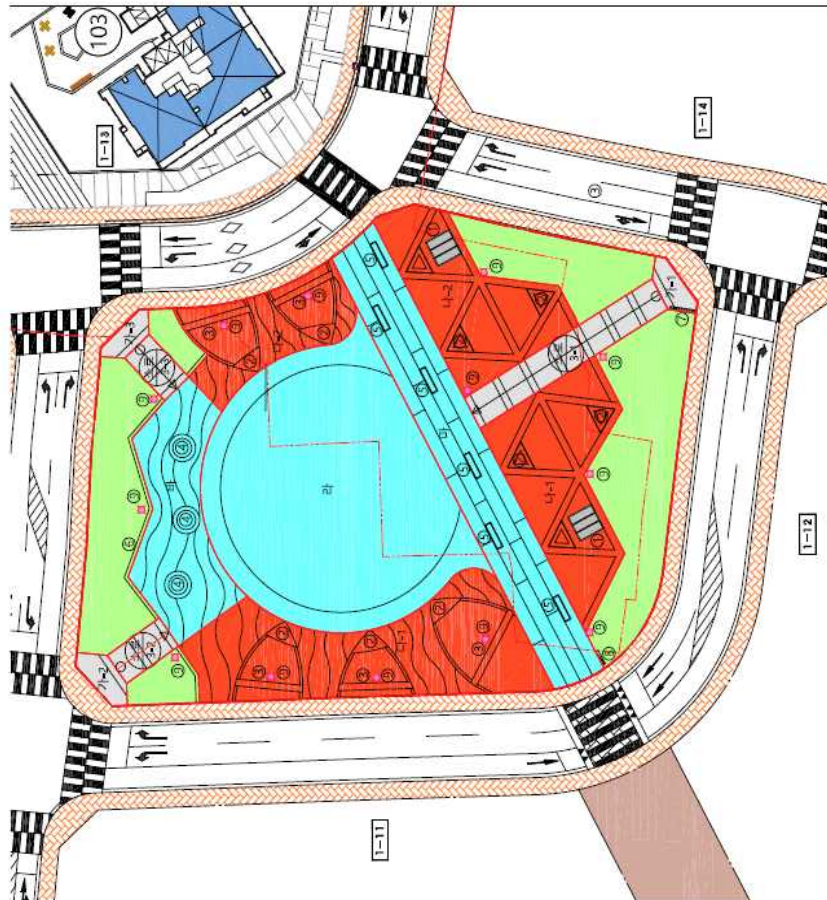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 (m2)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소 계			1,738.8	1,738.8					
	만남의 쉼터	나		816.4	816.4					
	만남의 쉼터 1	나-1	영중로16길 13-1	(427.2)	(427.2)					
	만남의 쉼터 2	나-2	영등포로43길 19	(389.2)	(389.2)					
	노변쉼터	다		922.4	922.4					
	노변쉼터 1	다-1	영중로20길 10-1	(643.2)	(643.2)					
	노변쉼터 2	다-2	영등포로43길 22	(279.2)	(279.2)					
교양시설	소 계			2,216.6	2,216.6					7
	행사마당	라	영중로18길 15-1	1,272.9	1,272.9					
	지역문화통로	마	영중로16길 11	579.4	579.4					
	지역문화마당	바	영중로20길 11-1	364.3	364.3					
	지역문화POST	⑤								6
	문화전시벽	⑥								1
관리시설	소 계									15
	자전거보관대	⑦	영중로14길 11-17							1
	안내판	⑧	영중로16길 12							1
	공원등	⑨	공원전역							13
녹지 기타	소 계			1,158.9	1,158.9					
	녹 지		전지역	1,158.9	1,158.9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51.1	255.5				
신설	소로	소 계			51.1	255.5				
		3	1	5	33.0	165.0	진입로	공원경계	지역문화통로	
			2	5	9.5	47.5	진입로	공원경계	지역문화마당	
			3	5	8.6	43.0	진입로	공원경계	지역문화마당	

조성세화

ਭ
ਭ
ਭ
ਭ
ਭ
ਭ
ਭ



서도구분	지점	지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면적(㎡)	용적률 (%)
	소재지		5,664.5	4,355.6			면적면적/면적지	1.76
도면 열람	가	① 도로변	358.2	352.2			-	-
		② 도로변	255.5	255.5			-	-
		가-1 도로변	94.7	94.7			-	-
		가-2 도로변	111.1	111.1			-	-
		가-3 도로변	133.6	133.6			-	-
토목시설	가	가-4 지점명호 3	198.2	198.2			-	-
		소계					2.19	2.2
		① 도로변					-	2
		② 도로변					-	9
		③ 도로변					-	5
농작물	나	④ 도로변	1,548.6	1,548.6			-	3
		소계					-	-
		나 도로변	815.4	815.4			-	-
		나-1 도로변	427.2	427.2			-	-
		나-2 도로변	388.2	388.2			-	-
농작물	다	다 도로변	922.4	922.4			-	-
		다-1 도로변	643.2	643.2			-	-
		다-2 도로변	279.2	279.2			-	-
		소계	2,218.6	2,218.6			-	7
		라 행정마을	1,772.9	1,772.9			-	-
농작물	바	지목농촌	579.4	579.4			-	-
		지목농촌	364.3	364.3			-	-
		지목농촌					-	6
		소계					-	1
		지목농촌					-	15
농작물	가	지점명호					-	1
		가-1 도로변					-	1
		가-2 도로변					-	13
		소계	1,158.9	1,158.9			-	-
		지점명호					-	-

합계 : (4,355.6㎡ / 5,664.5㎡) × 100 = 76.86%

$$\text{시설향} = (4,305.6\text{m}^2 / 5,464.5\text{m}^2) \times 100 = 78.8\%$$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신호개발	서울시 중구 왕십리로 415-3	서울시계 내 한강 (마포구 상암동 496-119 가양대교 북단)	선박 2척 (부선2)	정박대기	'19.02.01. ~ '19.02.28.	'19. 01.29.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